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2005. 12

심 규 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 약	1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3
3. 연구 방법	3
4. 보고서 구성	4
II. 관련 용어의 정리 및 판단기준 설정	5
1. 일요휴무제의 개념과 시범실시 내용	5
2. 공사기간의 개념	6
(1) 개념	6
(2) 공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
3. 공사원가의 개념	12
(1) 개념	12
(2) 산정 방법	14
4. 합리적인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20
(1) 건설현장 일요휴무 시범실시의 취지	20
(2)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	20
(3)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 기준	21
III.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23
1. 실태조사 개요 및 시범실시 현황	23
(1) 심층면담조사	23
(2) 설문조사	23
(3)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황 및 사전 조율	24
2.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 및 현장에서의 근로행태	25
(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25
(2) 건설현장에서의 근로행태	28

3.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견해	36
4. 일요휴무제 실시의 긍정적 영향	45
(1) 심층면담조사 결과	45
(2) 설문조사 결과	46
5. 일요휴무제 실시의 부정적 영향	49
(1) 심층면담조사 결과	49
(2) 설문조사 결과	53
6.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요약	56

IV. 관련 사례 연구

1.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일요휴무	57
(1) 일요휴무 실시 배경 및 관련 규정	57
(2) 근로 행태 일반	58
(3) 일요휴무 실시 현황 및 관련 사항	59
(4) 일요휴무 실시의 영향	60
(5) 일요휴무 실시의 여건	62
(6) 시사점	63
2. 독일 건설현장의 공기 및 원가 산정 개요	64
(1) 통상적인 근로시간	64
(2) 공사기간 산정	65
(3) 공사원가 산정	66
(4)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방법	66
(5) 시사점	68
3. 미국 건설현장의 연장근로시간 영향 분석 결과	69

V.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합리적 시행 방안

1. 기본 방향	71
2. '유급' 일요휴무제의 실시	74
(1) 주휴일 수당 지급의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74
(2) 주휴일 수당 지급의 당위성 : 근로기준법 규정	75
(3) 주휴일 수당의 확보 방안	76

3.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변화 추정	7
(1) 분석의 흐름	7
(2) 일요휴무 반영 여부에 따른 유형화	7
(3) 유형별 공사기간 및 직접노무비 변화	7
(4) 유형별 총공사원가 변화	8
4. 적정 공기 및 원가의 확보와 유지	8
(1) 적정 공기 및 원가의 확보	8
(2) 적정 공사비 유지	8
5. 건설현장에서의 세부 시행 방안	8
(1) 일요일 휴무를 감안한 효율적 공정관리 방안	8
(2) 주휴일 수당 전달 방안	8
(3) 우천시 처리 방안	8
6. 주변 여건 조성 방안	8
(1) 다수 현장의 동시 시행	8
(2)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으로 실공사비 누수 억제	8
(3) 공기지연 요인에 대한 사전적 해소	8
7.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및 판단기준의 충족	8
(1) 공사 수행 단계별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8
(2) 합리적 시행 방안에 의한 판단기준의 충족 가능성	9
8. 정책적 시사점	9

참고자료 및 문헌	93
------------------------	-----------

Abstract	95
-----------------------	-----------

부록	97
-----------------	-----------

〈표 차례〉

〈표 II-1〉 공사부문별 순작업기간과 비작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표 II-2〉 사업단계별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0
〈표 II-3〉 시공관리 분야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1
〈표 II-4〉 공사원가계산서(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별표 2)	13
〈표 II-5〉 공사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6
〈표 II-6〉 공사 종류규모기간별 경비율	17
〈표 II-7〉 회계예규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17
〈표 II-8〉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 기준	21
〈표 III-1〉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26
〈표 III-2〉 응답자의 특성별 평균 연령	27
〈표 III-3〉 응답자의 특성별 평균 경력	27
〈표 III-4〉 소속 형태	28
〈표 III-5〉 근로자의 소속 형태별 임금 지급 주기	29
〈표 III-6〉 임금 형태	30
〈표 III-7〉 임금 형태별 숙련 수준별 평균 임금	31
〈표 III-8〉 하루 평균 근로시간	31
〈표 III-9〉 공종별 본 현장에서의 현재까지 근로기간 분포	32
〈표 III-10〉 현장 위치와 응답자 주소지의 비교	32
〈표 III-11〉 현재의 숙소 분포	33
〈표 III-12〉 귀가 횟수	34
〈표 III-13〉 현재 일요일의 활동 상황	36
〈표 III-14〉 일요일 휴무 주장에 대한 인식	37
〈표 III-15〉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39
〈표 III-16〉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41
〈표 III-17〉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42
〈표 III-18〉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44
〈표 III-19〉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계속 일할 의사 유무에 대한 견해	45
〈표 III-20〉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장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48
〈표 III-21〉 십장이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 단계 수	52

<표 III-22>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단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55
<표 III-23> 일요휴무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요약	56
<표 IV-1> 독일 건설현장의 단체협약 근로시간	65
<표 V-1>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건설현장과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비교	73
<표 V-2> 일요일 휴무의 반영 여부에 따른 유형화	79
<표 V-3> 일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유형별 공기 및 직접노무비 변화 추정	81
<표 V-4>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시(건축공사)	83
<표 V-5> 유형별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추정치 예시	84
<표 V-6> 합리적 시행 방안에 의한 일요휴무제 판단기준의 충족	91

〈그림 차례〉

〈그림 I-1〉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선택과 예상되는 결과	2
〈그림 I-2〉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 구성	4
〈그림 II-1〉 건설공사의 사업단계 프로세스	7
〈그림 III-1〉 귀가 횟수 : 도로현장 응답자	35
〈그림 III-2〉 현재 일요일 활동 상황 : 도로현장 응답자	36
〈그림 III-3〉 일요휴무 주장에 대해 ‘무급’이라도 찬성하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율	38
〈그림 III-4〉 ‘무급’ 일요휴무제의 의무적 실시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율	39
〈그림 III-5〉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40
〈그림 III-6〉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 숙소 형태별	42
〈그림 III-7〉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43
〈그림 III-8〉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장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47
〈그림 III-9〉 십장이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 단계 수	52
〈그림 III-10〉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단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54
〈그림 IV-1〉 일요휴무의 장점에 대한 인식 : 포항공단과 시범현장 비교	61
〈그림 IV-2〉 일요휴무의 단점에 대한 인식 : 포항공단과 시범현장의 비교	62
〈그림 IV-3〉 독일 건설근로자의 통상적인 작업시간	65
〈그림 IV-4〉 독일의 공정표 예시	66
〈그림 IV-5〉 독일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핵심 요소	68
〈그림 IV-6〉 생산성에 미치는 지속적인 연장근로의 효과	70
〈그림 V-1〉 일요휴무제 합리적 시행 방안의 기본 방향 도출	74
〈그림 V-2〉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수당 지급과 직접노무비 반영	76
〈그림 V-3〉 건설사업주의 주휴일 수당 지불 여력 확보 방법	77
〈그림 V-4〉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의 흐름	78
〈그림 V-5〉 공사 수행 단계별 일요휴무제 시행 여건 요약	90

요 약

제1장 서론

- 2004년 7월부터 다른 업종 및 건설업체 본사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정기적인 휴무일 없이 주7일제가 지속되고 있음.
 - 게다가 직업전망의 부재, 고용 불안,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사회보험 적용 배제 등 직업으로서의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건설현장의 일은 대표적인 기피 직종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음.
 -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일 잘하는 숙련 인력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세를 넘긴 것으로 추정됨.
-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난 1년 남짓 전국 각 지역의 현장을 지정해 “건설현장 일요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건설현장 일요휴무제란 건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해 날씨와 무관하게 일요일마다 건설현장을 폐쇄해 건설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하지만 실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존성이 크고 대개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에 대해 일요휴무제를 시범 실시해본 결과 노사 양측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일요휴무제 시범현장을 중심으로 일요휴무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의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일요휴무제의 정착 조건을 수집하고자 함.
 - 아울러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원가의 변화에 대해 추정함.

제2장 관련 용어의 정리 및 판단기준 설정

- 다양한 개념의 공사기간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공사기간을 의미함.
 - 전체 사업기간 중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시공단계에 국한되는 공사기간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단순히 공사기간이라고 하면 협의의 공사기간을 말함.
 - 일요휴무제가 실시되면 일요일은 작업불능일로서 명시해야 함을 의미함.
- 공사원가는 건설생산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사용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함.
 - 일요휴무제가 실시되어 임금을 포함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바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함.
- 합리적인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시범실시는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실시와 관련된 당사자로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발주자,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각자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함.
 - 여기서 설정된 판단 기준은 향후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됨.

제3장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 일요휴무제 시범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개요와 실시 현황
 - 전국의 7개 시범실시 현장 중 4개 현장을 방문하여 발주기관의 감독, 감리자, 일반건설업체 관리자,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작업팀장,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만나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 7일에서 15일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07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7개 시범현장 중 실질적으로 일요휴무제를 실시했던 현장은 2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 중 한곳은 올 8월까지만 일요휴무제를 실시하였고, 다른 한곳은 작년 말까지 철저히 지키다가 올해 들어 공기에 쫓겨 지키지 못했다고 함.

-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및 근로행태

- 공종별로는 도로가 72%이고 아파트가 28%임. 직종은 형틀목공 24%, 철근공 20.2%, 터널공 11.5%, 일반공 10.6% 등임. 숙련 수준은 기능공(53.8%), 반장 및 팀장(20.8%), 조공 또는 일반공(17.9%) 등의 순임.
- 소속 형태 : 응답자의 74.8%는 전문건설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음.
- 임금 지급 주기 :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95.3%로서 대부분을 차지함.
- 임금 형태 : ‘일당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7.6%, ‘일당제 월급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3.7%로서 두 종류의 응답자를 합치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함.
- 평균 임금 액수 : 일당제의 경우 일반공의 일당이 58,750원인 데 비해 기능공과 반장은 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03,926원과 108,000원의 일당을 받고 있음.
-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나타났음.
- 당해 현장에서의 근로기간 : 현재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1월 ~ 1년 미만’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년 ~ 2년 미만’이 6.6%로 나타났음. 7일 미만과 2년 이상은 없음.
- 숙소 형태 : 응답자 중 37.4%만이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62.6%의 응답자는 현장 숙소에서 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귀가 횟수 : 도로현장의 경우 ‘한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46.8%, ‘2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20.8%,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는 응답이 18.2%의 순이며,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도 7.8%에 이름.
- 현재 일요일의 활동 상황 : 일한다는 응답자는 59.6%, 쉬는다는 응답자는 38.5%임.

-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 일요휴무 주장에 대한 견해 : ‘주휴일 수당을 주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4.8%,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3%인데 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침. 연령이 낮을수록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음.
 -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 ‘소득을 떨어뜨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0.9%,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음.
 -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 응답자의 98.1%가 ‘쉬겠다’로 응답했으며,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은 1.9%에 그침.
 -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72.9%,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음.
 -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이 27.1%로 크게 늘어남.
-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긍정적 영향
 - 능률이 오르고 안전사고가 줄며 품질이 나아지는 현상을 말함. 이러한 영향은 일요휴무제가 어느 정도 시행된 후 집이 가까운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고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임.
 - 감리자 입장에서는 일요휴무를 통해 일요일 작업에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어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함.
 - 심층면담조사에서 만난 2개의 작업 팀 소속 근로자들은 주휴일 수당이 주어질 경우 일요휴무를 통해 피로 회복, 가족 화목 도모, 능률 제고에 따른 처리 물량 증대, 품질 제고, 산재 감소 등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긍정도가 높아 1.5점을 기록한 항목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임.

-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르는 별도의 공기 연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른 보완 조치 없이 일요일에 무조건 현장을 폐쇄한 시범현장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히 공사 수행 중에 시범 현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기 부족 현상이 더욱 명백히 나타났고 결국 일요휴무를 지키지 못했음.
-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범실시 기간 중에 일요휴무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곳이 많지 않아 원가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엄격하게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비임대료 또는 간접노무비 등에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함.
- 일요일 하루를 강제로 휴무할 경우 작업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그 여파가 1일 이상 지속된다고 함. 하지만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일요일에 공급이 중단되는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중단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 금번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중 그에 따른 임금 보전은 없었음. 따라서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일요휴무제의 실시가 일요일 일당을 못 받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심층면담조사 결과 현장의 감리자, 관리자,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단단계 하도급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시공단계에서 활용할 공사비가 잠식되어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여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함.
- 특히 도로현장의 심층면담조사 결과 현장의 감리자나 관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시공 자체와 무관한 공기 지연 요인이 상존해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일요휴무의 실시가 어렵다고 함.

-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정도가 높아 3.8점을 기록한 항목은 ‘작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공기가 지연될 것이다’와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임. 상대적으로 부정도가 낮아 3.2점을 기록한 항목은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임.

제4장 관련 사례 연구

- 포항 플랜트 건설현장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무급 일요휴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에도 일요일에 주휴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요휴무제가 정착되었던 것임.
 - 둘째, 유급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적정 수준의 공기 및 원가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임.
 - 셋째, 일요휴무 실시의 일반화임.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모두가 일요휴무를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요휴무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넷째, 적정 공사비를 유지하려는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함.
 - 다섯째, 우천시에 대한 처리 조항의 마련도 필요함.
 - 여섯째, 상대적으로 단순한 하도급구조가 필요함.
 - 일곱째, 합법적인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배달사고를 방지해야 함을 시사함.
- 독일의 주39시간제 시행이 주는 시사점
 - 설계단계에서 일요일 등 법정휴무일에 대한 기간 및 수당을 공기 및 원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임.
 - 그리고 연속성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배치하여 주말의 휴무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임.

- 미국 건설현장의 연장근로시간 영향 분석이 한국의 일요휴무제에 주는 시사점
 - 일요휴무를 실시함으로써 연장근무수당의 절감, 근로자의 작업효율 향상, 결근률 제고, 재해사고율 저하, 생산품의 불량률 저하, 근로자의 피로도(unrest) 저하, 유능한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함.

제5장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합리적 시행 방안

- 주휴일 수당의 지급
 -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결과 발주자, 관리자, 건설업체 관리자 등은 일요휴무제 정착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주휴일 수당 지급’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주휴일)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6일을 만근할 경우 7일째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포괄역산제’에 따른 해석은 무리가 따름.
 -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주44시간제에 의거하여 1주일에 공사수행일로 6일을 산정하더라도 직접 노무비에는 주휴일 수당을 감안하여 7일치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주가 주휴일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발주자로 하여금 설계단계에서 주휴일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거나 낙찰률을 높이는 것임.
- 주휴일 수당의 반영이 공기 또는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

- 유형 2(일요휴무에 대한 공기 반영, 노무비 미반영)의 경우 공기는 원래부터 일요일을 휴무일로 반영했으므로 변화가 없으나 직접노무비는 주휴일 수당 37원이 증가하므로 증가율은 16.6%임.
- 또한 유형 2의 경우 건축공사의 원가가 5.2%, 토목공사의 원가가 6.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원가가 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실제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크기 만큼일 것으로 보임. 예컨대,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유형 2의 경우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가 상승률은 건축공사의 경우 3.6%, 토목공사의 경우 4.6%, 건설종합의 경우 이 둘을 가중평균한 4.6%일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로회복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나아가 양질의 신규인력 진입으로 숙련기반이 다져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은 결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적정 공기 및 원가의 확보와 유지

- 신규 공사인 경우에는 일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공기 및 원가 증가분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 발주해야 함. 한편,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일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공기 및 원가 증가분을 반영해 주어야 함. 회계통첩 등을 통한 반영 필요함.
- 한편, 공기와 원가에 일요휴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주단위로 공기와 원가를 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등 각 도급단계에서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 경쟁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유지함으로써 무리한 시공을 예방해야 함.

- 건설현장에서의 세부 시행 방안

- 일요일 휴무를 감안한 효율적 공정관리 방안 : 작업의 연속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종 또는 공정은 주초에 배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주휴일 수당 전달 방안 :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 합법적인 건설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함.

- 우천시 처리 방안 : 주중의 우천일이 하루일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주휴일 수당을 인정하고 일요일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함. 하지만 주중의 우천일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주휴일 수당을 인정하고 기후 여건이 좋은 일요일에는 작업함.

- 주변 여건 조성 방안

- 다수 현장의 동시 시행 : 관련 당사자가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공공공사 현장과 대규모의 민간현장 등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함.
-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으로 실공사비 누수 억제 : 실공사비 잠식을 억제해 주휴일 수당의 지급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휴일 수당의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음.
- 공기지연 요인에 대한 사전적 해소 : 당해 공사와 관련된 보상 업무와 예견되는 민원 업무는 미리 처리하고 착공함.

-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및 판단기준의 충족

- 현행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일요일에 현장 폐쇄만을 요구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 및 판단 기준이 거의 충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시행 방안을 도입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모든 판단기준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후진적인 주7일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 또는 공기의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함.
- 둘째,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일요휴무제의 실시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관련 당사자가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어 정착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함.

- 셋째, 하도급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실공사비의 누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주휴일 수당의 확실한 전달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넷째, 공기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를 시공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 요컨대,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단순히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작은 투자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일요휴무제의 실시는 피부에 와 닿는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후진적인 이미지를 털어 내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임.

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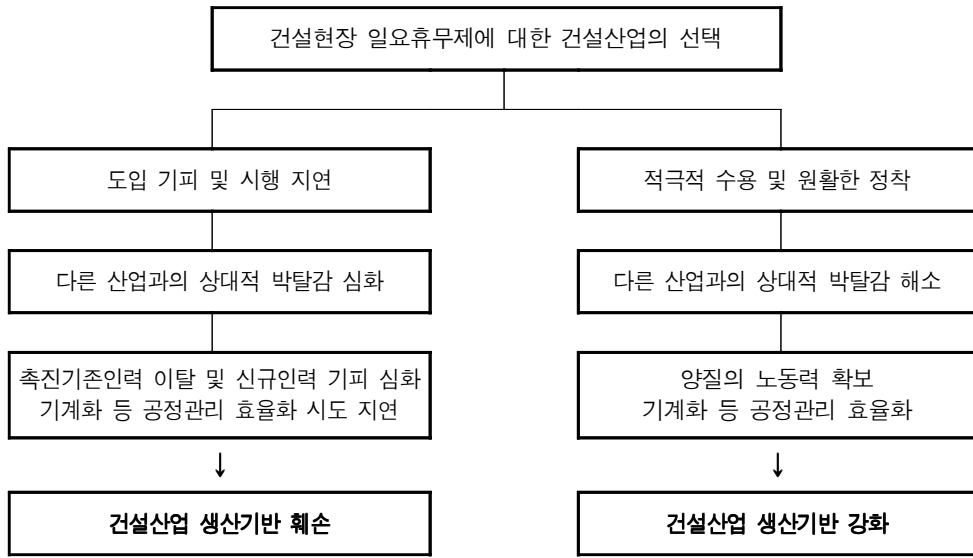
2004년 7월부터 다른 업종 및 건설업체 본사에서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정기적인 휴무일이 없이 주7일제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직업전망의 부재, 고용 불안,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사회보험 적용 배제 등 직업으로서의 기초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건설현장의 일은 대표적인 기피 직종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일 잘하는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세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4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52.5%이나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64.4%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가 심각해 향후 5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난 1년 남짓 전국 각 지역의 현장을 지정해 “건설현장 일요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건설현장 일요휴무제란 건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해 날씨와 무관하게 일요일마다 건설현장을 폐쇄해 건설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요휴무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실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 존성이 크고 대개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에 대해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 양측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일요휴무제는 주40시간제에 비해 후진적인 휴무형태이다. 일요일에 쉬는 것은 근로자나 학생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이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에 쉬지 않는 직장은 후진적인 직장인처럼 이미지가 점차 굳어져 가고 있다. 그 결과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데 하물며 일요일에 조차 쉬지 않는 직장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휴무제의 도입마저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면 건설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 신규인력이 진입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인력조차 기회만 주어지면 현장을 떠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건설생산 기

반의 와해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늦었지만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건설산업이 살기 위해 더욱 그러하다. <그림 I-1>에서 보듯이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선택은 자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1>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선택과 예상되는 결과



따라서 지난 1년 남짓 시범 실시해 온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인 실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원래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시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 개선, 소득저하 억제, 생산성 향상, 건설시공 유도 등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요휴무제 시범현장을 중심으로 일요휴무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의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일요휴무제의 정착 조건을 수집하고자 한다. 또한 일요휴무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고자 한다. 시범현장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과정에는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원가의 변화에 대한 추정도 포함된다.

2. 연구 범위

연구 내용은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로 인한 공기, 원가, 공정관리,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기 및 원가에 대한 계량적 분석도 포함된다. 또한 관련 국내외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한다.

주된 연구 대상은 건설현장의 생산직 근로자인 건설일용근로자¹⁾이다. 일요일휴무제 실시로 인한 근로행태 변화와 직접노무비 지출이 주로 건설일용근로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인 건설현장은 일요일휴무제를 시범 실시한 곳이다. 또한 비교 분석을 위해 포항의 플랜트 현장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각 현장의 사업주, 감리자, 발주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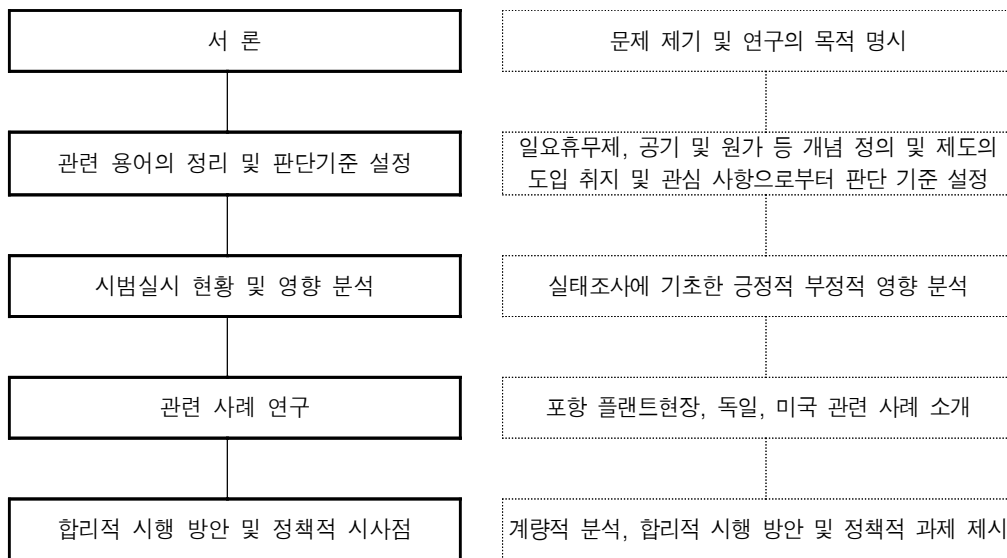
실태조사와 문헌조사로 대별된다. 실태조사로는 심층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의 7개 시범실시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연구 과정에서 먼저 7개 현장 중 4개 현장을 방문하였다. 발주자, 감리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작업팀장, 건설일용근로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일요일휴무제 실시로부터 받았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7개 현장 중 6개 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 포항 플랜트 현장에도 방문하여 원수급자, 하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 등과 면담하고 근로자에게 간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당사자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현장성을 검증받고 현실적이고도 상생 가능한 합리적 시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와 외국의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데 활용하였다.

1) 여기서 말하는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비정규근로자들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즉,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비정규직에 국한되지 않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을 포괄한다. 이들을 기술직이나 관리직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건설기능인력으로 부르기도 한다.

4. 보고서 구성

<그림 I-2>에서 보듯이 보고서는 모두 5개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을 밝힌다. 제2장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 및 판단기준 설정에서는 일요일휴무제, 공기 및 원가 등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요일휴무제의 도입 취지 및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으로부터 합리적인 일요일휴무제가 갖추어야 할 판단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3장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시작한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 현황을 먼저 소개하고 심층면담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등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일요일휴무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시범현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향후 일요일휴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행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I-2>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관련 용어의 정리 및 판단기준 설정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요일휴무제, 공사기간, 공사원가 등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보고자 한다. 공사기간이나 원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중 심규범·김지혜(2004)²⁾에 언급된 주요 용어를 인용하고자 한다.

1. 일요일휴무제의 개념과 시범실시 내용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건설현장 일요일휴무제란 건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해 날씨와 무관하게 일요일마다 건설현장을 폐쇄해 건설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 이렇게 기후와 무관하게 매주 일요일에 현장을 폐쇄시킨다면 이것은 당연히 현행의 관행과 달라 공사기간 및 공사원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여타 주휴일 제도와 무관하게 대체로 일요일에도 작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일요일휴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건설현장의 고령화 및 숙련인력 고갈이었다.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그리고 직업전망 부재 등이 청년층으로 하여금 건설현장을 기피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설기능인력의 진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주40시간제를 건설현장에 도입하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업종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일요일 휴무를 시도하게 되었다. 요컨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설현장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범실시 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삼았다. 대상 현장은 지방국토청과 도로공사 및 주택공사의 1개 현장으로 모두 8개였다. 실제로는 지방국토청 현장 5개와 도로공사

2) 심규범·김지혜(2004),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및 주택공사 현장 1개씩으로 모두 7개 현장—도로현장 6곳과 아파트현장 1곳—에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가 시행되었다. 선정기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공정률 50% 이하로서 2005년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현장이며 2004년 5월까지 공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현장이었다.

일요일휴무 형태는 현장 완전 폐쇄를 원칙으로 하였다. 즉, 주40시간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의 모든 건설업체가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현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하였다. 다만, 강우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르는 공기 및 원가 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주44시간(일요일휴무)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있어 공기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물량기준에 의한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가 산정되어 일요일휴무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공사기간의 개념

공사기간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설생산의 경우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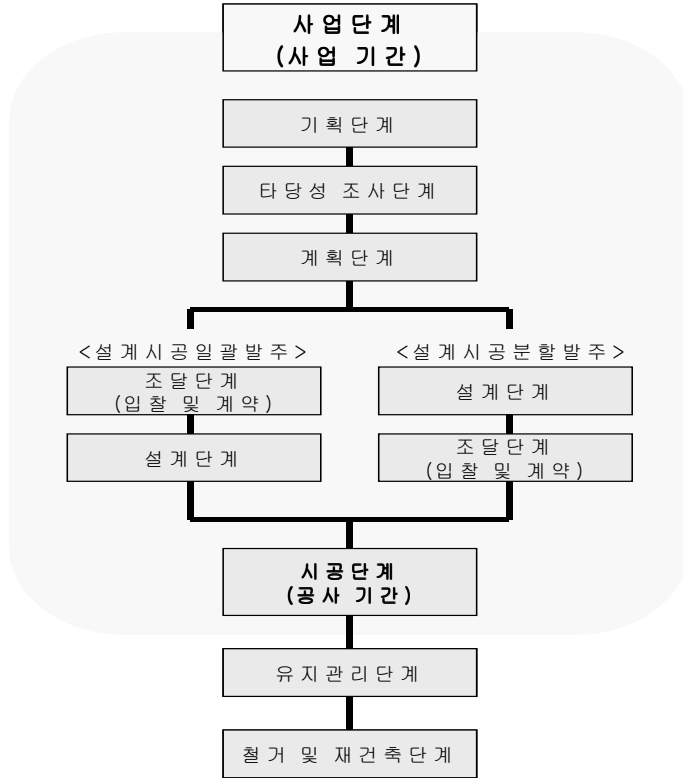
(1) 개념

다양한 개념의 공사기간이 존재한다. 첫째, 광의의 공사기간이다. 이것은 사업기획단계부터 시공단계를 거쳐 완공하는 단계까지 공사기간으로서 사업기간이라고도 한다. 둘째, 협의의 공사기간이다. 전체 사업기간 중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시공단계에 국한되는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단순히 공사기간이라고 하면 협의의 공사기간을 말한다. 셋째, 적정공기³⁾이다. 이것은 공기(工期)를 준수하며 시공정도(施工精度) 및 경제상 피해를 주지 않는 공사기간을 말한다. 통상 적정공기를 산정하기 위해 공공 발주처나 민간 건설업체에서는 나름의 공사기간 산정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산정하는 공사기간은 대부분 시공단계를 의미하는 협의의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넷째, 계약공기이다. 발주처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공사기간을 말한다. 실무에서 사용하

3)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의 효율적 공정관리와 적정공기산정방안, 1991.3, p.29 참조

는 개념이다.

<그림 Ⅱ-1> 건설공사의 사업단계 프로세스



(2) 공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크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요소와 시공단계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1)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요 관련 법령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다. 동법의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시행규칙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관련된다.

둘째,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이다. 동 예규 중 특히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9조(설계변경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다.

셋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이다. 주로 제3조(원가계산의 비목),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제14조(공사원가), 제15조(작성방법), 제16조(재료비), 제17조(노무비), 제18조(경비), 제19조(일반관리비), 제20조(이윤) 등과 관련된다.

넷째,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이다.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가 관련된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이다. 동법 제46조(도급근로자), 제49조(근로시간),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3조(휴게), 제54조(휴일),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동 시행령 제25조(주휴일)가 관련된다.

2) 시공단계에서 공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대한주택공사(1998)의 ‘건설공사의 적정 표준공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작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작업기간과 비작업기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요일은 비작업기간 중 통제불가능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II-1> 공사부문별 순작업기간과 비작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사부문	순작업기간 (공사관련 요인)	비작업기간 (비공사관련 요인)
지하 공사 (기초 및 구조체)	기초공법 동수 파일깊이 기타 작업여건	1) 통제 불가능 요인 · 기상조건 온도 강우 강설 바람
지상골조 공사	작업분할 및 순서 가설재 이동주기 작업조 이동주기 생산성 공구분할방법	· 공휴일 설날, 추석, 신정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마감공사	작업물량 작업인원 작업부위별 생산성 작업조편성 작업방식	2) 통제 가능 요인 · 현장조건 공정의 부조화 시공의 난이도 현장준비 미비 · 발주자 기인 요인 잡은 설계변경 행정의 경직 및 의사결정 지연 고위층 방문 · 수급자 기인 요인 기능공 부족 및 인력투입 일관성 부족 기능공 수준 미달 중층 하도급 구조 수급자의 공사관리 능력 부족 자금운영계획의 불합리 · 기타 교통혼잡 소송 자연적, 인공적 환경보전 문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입지조건 등

자료 : 대한주택공사, 건설공사의 적정 표준공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1998.2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2)의 ‘건설공사의 공기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는 사업단계별로 공기지연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기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요휴무제 실시는 주로 현장의 시공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2> 사업단계별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업 단계	공기지연 관련 문제점	공기 산정시 고려요인
기획 단계	·관계부처의 심의 검토 및 협의 지연 ·사업계획의 변경 ·불충분한 사업계획과 검토 불충분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협의 지연 및 보상 지연	·국가 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정 ·사전조사 ·재원조달계획
조사 단계	·공사비 과소책정 ·불충분한 조사 ·사업타당성조사 부실 및 건설방침 확정 지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발주 단계	·입찰 및 발주지연 ·공법변경 및 설계변경 ·설계지연 ·불충분한 설계 및 설계보완	·기본, 실시설계기간 ·입찰기간 ·예산요구 및 편성
시공 단계	·공사편입지역의 지장물 철거지연 ·기자재 조달 지연 ·관계부처 협의 지연 ·추가예산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 수행함에 따른 공기부족 ·정부노임 및 기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지연 ·사고발생으로 인한 공사안전진단 ·기타 공사관리계획 미흡으로 시공지연	·준비기간 ·공종별 작업기간 ·감독업무수행 ·도급자 능력 ·예산확보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의 공기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1992.12

시공관리 분야별로 공사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재구성하면 인력관리, 장비 및 양중관리, 자재조달관리, 금융(원가)관리, 시공법, 공정관리, 안전관리, 하도급업체관리, 기상조건, 현장여건, 설계관리, 법 제도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요휴무제의 실시는 특히, 인력관리, 장비 및 양중관리, 자재조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하도급업체관리, 법 제도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사기간 산정시 이러한 시공관리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공기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발주처에서 정한 계약공기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다음의 관리요소들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10.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표 II-3> 시공관리 분야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야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야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력 관리	·휴일 등 비작업기간 ·기능공의 숙련도 ·작업조 편성 ·작업조 이동주기 ·작업 인원 (기능공 및 인력투입 일관성) ·관리 인원 (관리감독 인력투입) ·노임 인상	안전 관리	·기능공의 숙련도 ·휴일 등 비작업기간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자재 조달 관리	·외주품의 반입 ·교통혼잡 ·휴일 등 비작업기간 ·기자재 가격 인상	하도급업 체 관리	·휴일 등 비작업기간 ·기능공의 숙련도 ·작업조 편성 ·작업 인원 (기능공 및 인력투입 일관성)
장비, 양중 관리	·토량 반출입 ·가설재 이동주기 ·교통혼잡 ·휴일 등 비작업기간	기상 조건	·동절기의 외기 온도 ·강우, 강설, 바람
금융 (원가) 관리	·공사비 조달방안 ·공사비 운영방안 ·기자재 가격 인상 ·노임 인상 ·경비 및 관리비 인상	현장 여건	·입지조건 ·지중장애물 ·지하수 ·작업여건
시공법	·기초공법 ·지하공사공법 ·거푸집 존치 및 양생기간 ·미장, 도장공사의 양생기간 ·공구분할방법 ·기타 작업방식	설계 관리	·설계 변경 ·실시설계 지연 ·지하구조체 규모 ·건물 규모(동수, 층수, 층고, 면적 등) ·작업 물량
공정 관리	·공사준비기간 ·공종별 작업기간 ·다양한 공종의 동시진행 ·시운전(가동) 및 준공 전 청소기간 ·작업분할 및 순서 ·가설재 이동주기 ·작업조 이동주기 ·휴일 등 비작업기간	법 제도 관리	·휴일 비작업기간 ·관련자(발주자, 원하도급자 등)의 의사결정(협의) 방식 ·환경보전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요 인 ·소송

3. 공사원가의 개념

공사원가는 건설생산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사용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요휴무제가 실시되어 임금을 포함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바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 개념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법규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통계목적으로 관련기관에서 조사 공표하는 개념 등 다양한 원가 개념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국가계약관계법령 중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의 공사원가 개념을 활용한다. 공공공사의 입찰에서 이 개념을 활용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공사원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① 원가계산의 비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② 공사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 ③ ‘공사원가계산서’의 비목 구성 : 총원가는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순공사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각 비목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부분품비로 구성된다.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로 구성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이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체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다. 경비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의미한다. 경비에 포함된 26개 비목은 <표 II-4>와 같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2) 산정 방법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원가계산 비목별 가격결정 방식을 소개한다. 공공발주기관에서도 회계예규를 기초로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직접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재료량 : 설계도서 및 품셈에 의한 견적 수량
 - 단위당가격 :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2개 업체 이상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자료 등을 활용

- 간접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 경비에 포함하는 방식
 - = 직접재료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
 - 재료량 : 설계도서 및 품셈에 의한 견적 수량
 - 단위당가격 :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2개 업체 이상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자료 등을 활용

14.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여야 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총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총당금
-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6조,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1조, 제19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 × 단위당가격(노무비단가)
 -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 노무량 : 설계도서에 의한 건적 수량을 품셈에 대비하여 필요 인력을 산정함.
 - 단위당가격 : 2개 업체 이상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자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등을 활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율 : 2개 업체 이상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자료,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공무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등을 활용함.
 -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공무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1989.03.08 회계 2210-591)'
 - 활용예시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율 = (15% + 17%+ 14.5%) / 3 = 15.5%

<표 II-5> 공사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 사 종 류 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준설 등)	15.5
	기타(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 사 규 모 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무원가 기준)	5억원 미만	14.0
	5 ~ 30억원 미만	15.0
	30억원 이상	16.0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13.0
	6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자료 :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공무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1989.03.08 회계 2210-591)'

- 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각 경비항목당 요율
 -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 또는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함. 또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무원가구성분석' 자료를 활용함.

<표 II-6> 공사 종류규모기간별 경비율

구 분		경비율(%)	공의원가율(%) (재료비+노무비율)
공사종류	토목	47.932	100.0
	건축	32.067	
	산업설비	40.994	
	조경	41.012	
공사규모	5억 미만	19.130	100.0
	5억 이상 - 30억 미만	25.216	
	30억 이상 - 50억 미만	33.600	
	50억 이상 - 100억 미만	36.751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43.166	
공사기간	200억 이상	44.589	100.0
	6개월 이하	24.937	
	7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20.447	
	1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42.293	
	37개월 이상	48.4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2002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율 : 2개 업체 이상의 최근 연도 원가계산자료,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 별표3) 등을 활용함.

<표 II-7> 회계예규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구 분	공의원가	일반관리비율
일반건설공사	5억원미만	6.0
	5억원 ~ 30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5천만원미만	6.0
	5천만원 ~ 3억원미만	5.5
	3억원 이상	5.0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이윤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20조에 규정된 요율(2004년 현재 15%)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항목은 직접노무비인데 현행 공사비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 또는 아래 산식에 휴무일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단위당가격}$$

$$\text{노무량} = \text{제조수량} \times \text{작업인원}, \text{ 또는 } \text{노무량} = \text{작업시간} \times \text{작업인원}$$

< 조적공사 직접노무비 산정 예 >

※ 시멘트벽돌 25,000매를 1.0B, 높이 3.6M 이하, 2층에 쌓는 공사의 경우
2003년 건설공사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에 의해 시멘트벽돌 1,000매당 조적공 1.6인, 보통인부(쌓기) 0.9인, 보통인부(소운반) 0.6인이 들어감.

$$\text{조적공 수} = \frac{25,000}{1,000} \times 1.6\text{인} = 40 \text{인}$$

$$\text{보통인부(쌓기) 수} = \frac{25,000}{1,000} \times 0.9\text{인} = 22.5 \text{인}$$

$$\text{보통인부(소운반) 수} = \frac{25,000}{1,000} \times 0.6\text{인} = 15 \text{인}$$

2003년도 하반기 적용임금(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에 의해 조적공 시중노임은 83,302원, 보통인부 시중노임은 52,483원임.

$$\text{조적공 노무비} = 40\text{인} \times 83,302\text{원} = 3,332,080 \text{원}$$

$$\text{보통인부(쌓기) 노무비} = 22.5\text{인} \times 52,483\text{원} = 1,180,867.5 \text{원}$$

$$\text{보통인부(소운반) 노무비} = 15\text{인} \times 52,483\text{원} = 787,245 \text{원}$$

<기초공사 직접노무비 산정 예>

※ H-Beam(길이 8m, H=300~500, 1일 11.71분 설치)을 10일 동안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2003년 건설공사표준품셈(대한건설협회)에 의해 1일당 비계공 3인, 철골공 2인, 보통인부 2인, 특별인부 1인이 들어감.

비계공 수 = 10일 × 3인/일 = 30 인

철골공 수 = 10일 × 2인/일 = 20 인

보통인부 수 = 10일 × 2인/일 = 20 인

특별인부 수 = 10일 × 1인/일 = 10 인

2003년도 하반기 적용임금(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에 의해 비계공 시중노임은 97,513원, 철골공 시중노임은 83,811원, 보통인부 시중노임은 52,483원, 특별인부 시중노임은 67,141원임.

비계공 노무비 = 30인 × 97,513원/일 = 2,925,390 원

철골공 노무비 = 20인 × 83,811원/일 = 1,676,220 원

보통인부 노무비 = 20인 × 52,483원/일 = 1,049,660 원

특별인부 노무비 = 10인 × 67,141원/일 = 671,410 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취>

-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에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4. 합리적인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1) 건설현장 일요휴무 시범실시의 취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시범실시는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절한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건설산업 노동계의 요구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대한 강제적인 폐쇄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자신의 과도한 피로 누적 예방, 가족생활의 화목 도모, 산재 예방, 품질 제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을 목표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실시와 관련된 당사자로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 발주자,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재정경제부는 적정 공사원가를 반영하고자 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노동력 재생산을 촉진하고자 한다.

다음은 발주자의 입장이다. 발주자는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 및 원가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한편 감독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입장이다. 일요휴무제의 실시를 통해 적정 공기 및 원가 확보, 건설기능인력 확보, 효율적인 공정 관리, 합리적인 휴일수당의 지급 등, 산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적정 공기 및 원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기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다.

건설근로자의 입장이다. 근로자 자신의 과도한 피로 누적 예방, 가족생활의 화목 도모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일요일 주휴일 수당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 폐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3)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 기준

일요휴무제의 도입 취지와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을 종합하면 <표 II-8>과 같이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향후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 II-8>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 기준

당사자	역 할	관심 사항 및 판단 기준	
정부	건설교통부	·건설생산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 규정 ·안정적 건설생산기반 구축	·건설생산성 제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신규인력 확보
	노동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화 ·휴일 및 휴가제도 정착 ·시행 기준과 방식 규정 및 위반 제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정착
	재정경제부	·공사원가 회계기준 규정	·적정 공사원가 반영
발주자	·건설공사 발주 및 감독 ·건설공사 원가 및 기간 책정	·양질의 건설생산물 확보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사용자	·건설공사 수주 ·공정관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적정 원가 및 기간 확보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주휴일 수당 산정 방법 및 적정 수준	
근로자	·노동력 공급을 통한 직접 생산 ·기본임금 및 주휴일 수당 수령 ·노동력 재생산	·피로 회복 ·일요일 주휴일 수당 확보 ·가족의 화목 도모	

22.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제3장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먼저 일요휴무제 시범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개요와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 심층면담조사 및 설문조사에 나타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실태조사 개요 및 시범실시 현황

실태조사는 심층면담조사와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실시 현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일요휴무제의 시행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기 위함이다.

(1) 심층면담조사

전국의 7개 시범실시 현장 중 4개 현장을 방문하여 발주기관의 감독, 감리자, 일반건설업체 관리자,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작업팀장,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만나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3개 현장은 도로현장이고 1개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었으며 현장 방문 시기는 10월 중 하순이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5년 11월 7일에서 15일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07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설문조사는 엄격한 의미의 통계적 대표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현장 자체에 대한 표본 추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표본 추출이 대표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계적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본 설문조사의 결정적인 흠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요휴무제를 경험해 본 근로자들에게 일요휴무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시범현장에서 본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 중 대부분은 일요휴무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엄밀한 일요일 현장 폐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일요휴무제가 이루어진 현장에서도 진행 중인 공정이 달라져 일요휴무제 경험자들은 이미 그 현장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일요휴무제 경험자로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대해 평가를 내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일부 근로자들과 관리자 등은 일요휴무제를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시범현장 이외의 일반 현장 근로자에 비해서는 일요휴무제에 대한 감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황 및 사전 조율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7개 시범현장 중 실질적으로 일요휴무제를 실시했던 현장은 2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한곳은 올 8월까지만 일요휴무제를 실시하였고, 다른 한곳은 작년 말까지 철저히 지키다가 올해 들어 공기에 쫓겨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도로현장의 경우 공기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착공 초기의 준비기간에 시범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준공시기에 가까워진 현장에서는 공기에 쫓겨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여유가 없어 실제로는 일요일 작업을 거의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리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공기, 원가, 산재, 품질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거나 시범실시 현장과 미실시 현장을 비교하는 식의 분석을 불가능하였다.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이전에 시공회사에게 일요휴무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시공 중인 현장과 입찰 단계의 현장이 달랐다.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는 당해 현장이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지받았다고 한다. 입찰 단계의 현장에서는 입찰자 유의사항에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 현장임을 명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현장이든 일요휴무제의 실시 때문에 공기나 원가를 조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입찰서류에 명시한 사례>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대상 지구

○○ 공구는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작업을 승인하지 않음.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간)

2.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 및 현장에서의 근로행태

일요휴무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이들의 근로행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전지식은 이들이 보여주는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인식 또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표 III-1>을 통해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먼저 공종별로는 도로가 72%이고 아파트가 28%이다. 지방 국토청의 공사 중 도로공사가 많아 일요휴무제 시범현장도 도로공사 현장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파트 현장은 경기 파주 한 곳이다. 현장 위치는 경기 파주 28.0%, 전북 임실 20.6%, 경북 성주 18.7% 등이다. 주소지는 경기 22.4%, 경북 17.8%, 서울 12.1%, 충북 10.3% 등이다. 직종은 형틀목공 24%, 철근공 20.2%, 터널공 11.5%, 일반공 10.6% 등이다. 연령은 30대(37.4%), 40대(32.7%), 50대(18.7%)의 순이다. 평균 연령은 42.5세이다.⁴⁾ 경력은 10~19년(45.8%), 2~5년(27.1%)이 많으며 2년 미만은 없다. 숙련 수준은 기능공(53.8%), 반장 및 팀장(20.8%), 조공 또는 일반공(17.9%) 등의 순이다.

4)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건설현장에서 만나 본 작업팀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령자의 경우 설문지 응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현장의 실무자들이 젊은 층을 위주로 설문지를 배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 명, 세, 년, %)

항 목		응답자수	구성비	항 목		응답자수	구성비
직종	계	104	100.0	주소지	계	107	100.0
	형틀목공	25	24.0		서울	13	12.1
	일반공	11	10.6		부산	4	3.7
	철근공	21	20.2		광주	2	1.9
	측량	1	1.0		인천	3	2.8
	콘크리트공	5	4.8		대전	1	0.9
	터널공	12	11.5		대구	8	7.5
	비계공	2	1.9		경기	24	22.4
	방수공	1	1.0		강원	8	7.5
	미장공	1	1.0		충북	11	10.3
	조적공	6	5.8		충남	3	2.8
	내장공	6	5.8		전북	3	2.8
	기계설비	5	4.8		전남	7	6.5
전기공	6	5.8	경북	19	17.8		
건설장비	2	1.9	경남	1	0.9		
현장 공종	계	107	100.0	현장 위치	계	107	100.0
	도로	77	72.0		경기 포천	14	13.1
	아파트	30	28.0		경기 파주	30	28.0
연령 규모	평균	42.5세		충북 단양	6	5.6	
	계	107	100.0	전북 임실	22	20.6	
	20대	7	6.5	경북 칠곡	15	14.0	
	30대	40	37.4	경북 성주	20	18.7	
	40대	35	32.7				
	50대	20	18.7				
60대 이상	5	4.7					
경력 규모	평균	11.8년		숙련 수준	계	106	100.0
	계	107	100.0		조공 또는	16	17.9
	2-5년	29	27.1		일반공	7	6.6
	6-9년	11	10.3		준기공	57	53.8
	10-19년	49	45.8		기능공	22	20.8
	20-29년	12	11.2		반장 및 팀장 등	1	0.9
30년 이상	6	5.6	기타				

<표 Ⅲ-2>는 특성별 평균 연령을 보여 주고 있다. 공종별로는 도로 41.9세, 아파트 44.1세이다. 현장 위치별로는 충북 단양 56.2세, 전북 임실 44.5세, 경기 파주 44.1세 등이다. 주소지별로는 대전 54.0세, 서울 51.5세, 전북 43.3세, 부산 43.0세, 인천 42.7세 등이며, 직종별로는 미장 56.0세, 조적 56.0세, 터널 48.6세, 일반공 44.7세, 방수 44세 등이다.

<표 III-2> 응답자의 특성별 평균 연령

(단위 : 세)

특 성		연 령	특 성		연 령	특 성		연 령
평 균		42.5						
현장위치	경기 포천	39.5	주소지	서울	51.5	직 종	형틀목공	43.8
	경북 칠곡	36.9		인천	42.7		일반공	44.7
	충북 단양	56.2		대전	54.0		철근공	38.3
	전북 임실	44.5		대구	42.5		측량	31.0
	경기 파주	44.1		부산	43.0		콘크리트	36.4
	경북 성주	40.3		광주	41.5		터널	48.6
				경기	41.0		비계	38.0
공 종	도 로	41.9		강원	39.8		방수	44.0
	아파트	44.1		충북	47.2		미장	56.0
숙련수준	일반공	42.7		충남	38.7		조적	56.0
	준기공	44.9		경북	37.7		내장	42.5
	기능공	41.7		경남	37.0		기계설비	29.0
	반장, 팀장	44.8		전북	43.3		전기	41.8
	기 타	27.0		전남	40.4		건설장비	38.5

<표 III-3>은 특성별 평균 경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응답자의 평균 경력은 11.8년이다. 공종별로는 도로 11.1년, 아파트 13.4년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 19.7년, 60대 이상 15.2년, 40대 13.4년 등이다. 직종별로는 조적 27.2년, 터널공 15.4년, 형틀목공 13.6년, 내장공 13.0년 등이며 숙련 수준별로는 반장 16.2년, 기능공 12.5년 등이다.

<표 III-3> 응답자의 특성별 평균 경력

(단위 : 년)

특 성		경 령	특 성		경 령
평 균		11.8			
공종	도 로	11.1	숙련수준	조공 또는 일반공	7.2
	아파트	13.4		준기공	6.3
	형틀목공	13.6		기능공	12.5
직종 재분류	일반공	8.2		반장, 팀장 등	16.2
	철근콘크리트공	9.4		20대	4.0
	터널공	15.4		30대	7.3
	조적공	27.2	40대	13.4	
	내장공	13.0	50대	19.7	
	전기공	6.2	60대 이상	15.2	
	기 타	8.5			

(2) 건설현장에서의 근로행태

<표 III-4>는 응답자의 소속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의 74.8%는 전문건설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고, 23.3%는 일반건설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74.8%의 응답자 중 37.4%는 직영으로 투입되고, 나머지 37.4%는 작업 팀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소속이 45.5%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아파트현장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 팀 소속이 70.0%로 압도적으로 많다. 숙련 수준별로는 일반공의 경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소속이 많고, 기능공과 반장은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또는 작업 팀 소속이 많다. 연령대별로도 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60대 이상은 주로 일반건설업체의 직영으로 소속된 경우가 많다.

<표 III-4> 소속 형태

(단위 : %)

특 성		소속 형태					
		계	일반건설업체의 직영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기타
계		100.0	12.1	37.4	11.2	37.4	1.9
공종	도로	100.0	13.0	45.5	14.3	24.7	2.6
	아파트	100.0	10.0	16.7	3.3	70.0	0.0
숙련 수준	일반공	100.0	31.6	36.8	0.0	26.3	5.3
	준기공	100.0	14.3	0.0	42.9	42.9	0.0
	기능공	100.0	8.8	42.1	8.8	38.6	1.8
	반장, 팀장 등	100.0	4.5	36.4	18.2	40.9	0.0
연령 대	20대	100.0	0.0	42.9	0.0	57.1	0.0
	30대	100.0	10.0	42.5	12.5	32.5	2.5
	40대	100.0	11.4	45.7	5.7	37.1	0.0
	50대	100.0	10.0	15.0	25.0	45.0	5.0
	60대이상	100.0	60.0	20.0	0.0	20.0	0.0

<표 III-5>는 임금 지급 주기를 보여 준다.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95.3%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건설업체가 기성금을 받는 주기가 월 1회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 형태별로도 대체로 차이가 없으나 일반건설업체 직영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받거나 분기별로 받는다는 등 기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임금형태별로도 큰 차이는 없다. 즉, 일당제 또는 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월 1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 근로자의 소속 형태별 임금 지급 주기

(단위 : %)

특 성		임금 지급 주기				
		계	1주마다	보름마다	매월	기타
계		100.0	0.9	0.9	95.3	2.8
소속 형태	일반건설업체 직영	100.0	0.0	0.0	84.6	15.4
	전문건설업체 직영	100.0	0.0	0.0	97.5	2.5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100.0	0.0	0.0	100.0	0.0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100.0	2.5	2.5	95.0	0.0
임금 형태	일당제	100.0	2.0	0.0	91.8	6.1
	일당제 월급	100.0	0.0	2.2	97.8	0.0
	도급제	100.0	0.0	0.0	100.0	0.0

<표 III-6>은 임금 형태를 보여 준다. ‘일당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7.6%, ‘일당제 월급으로 받는다’는 응답자가 43.7%로서 두 종류의 응답자를 합치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일당제와 일당제 월급의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당제 월급 역시 일한 날수(또는 현장의 공수)에 일당을 곱하는 식으로 임금을 산정한 후 지급 주기가 월 1회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중에 비가 오거나 휴무일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책정되지 아니한다. 공종별로도 큰 차이는 없다. 숙련 수준별로는 주로 작업 팀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기능공과 반장 등에서 도급제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소속 형태별로는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 팀에 소속된 응답자에게서 도급제의 비율(16.9%)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6> 임금 형태

(단위 : %)

특성 \ 임금형태		계	일당으로 받는다.	일당제 월급으로 받는다.	도급제(성과급제, 돈내기 등)로 받는다.	기타
계		100.0	47.6	43.7	7.8	1.0
공 종	도 로	100.0	48.6	41.9	8.1	1.4
	아파트	100.0	44.8	48.3	6.9	0.0
숙련 수준	조공 또는 일반공	100.0	42.1	47.4	5.3	5.3
	준기공	100.0	57.1	42.9	0.0	0.0
	기능공	100.0	57.4	33.3	9.3	0.0
	반장, 팀장 등	100.0	27.3	63.6	9.1	0.0
소속 형태	일반건설업체 직영	100.0	69.2	30.8	0.0	0.0
	전문건설업체 직영	100.0	34.2	57.9	7.9	0.0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100.0	50.0	33.3	16.7	0.0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100.0	55.3	36.8	7.9	0.0

<표 Ⅲ-7>은 평균 임금 액수를 보여 준다. 일당제의 경우 일반공의 일당이 58,750원인 데 비해 기능공과 반장은 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03,926원과 108,000원의 일당을 받고 있다. 기능공과 반장간의 차이가 적은 것은 양 집단의 숙련 수준은 유사하나 경우에 따라 반장으로 나서기도 하고 단순히 기능공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당제 월급의 경우 일반공의 월급이 1,625,000원이고 반장의 월급이 2,438,462원으로 나타나 양자간의 격차가 일당제의 경우에서 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일한 날수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 기능공과 반장과의 격차가 일당에 비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일한 날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리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7> 임금 형태별 숙련 수준별 평균 임금

(단위 : 원)

숙련 수준	임금 형태	일당제(하루 기준)		일당제 월급(한달 기준)		도급제(한달 기준)
		금액	지수	금액	지수	
평균		93,070	-	2,013,158	-	2,000,000
조공 또는 일반공		58,750	54.4	1,625,000	66.6	-
준기공		62,000	57.4	1,850,000	75.9	-
기능공		103,926	96.2	1,873,333	76.8	2,000,000
반장, 팀장 등		108,000	100.0	2,438,462	100.0	-

<표 III-8>은 근로시간을 보여 준다. 근로시간은 작업 시작에서 종료에 이르는 시간을 응답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과 오후의 휴식시간 30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그 결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근로시간이 9.7시간으로 아파트현장의 8.9시간보다 길다. 연령대별로는 미미하나 높은 연령대의 응답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III-8>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특 성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
공 종	도 로	9.5
	아파트	9.7
연령대	20대	8.9
	30대	9.1
	40대	9.4
	50대	9.6
	60대 이상	9.6
	60대 이상	9.7

주 : 근로시간(시간) = (종료시각 - 시작시각) - 점심(1시간) - 휴식시간(30분)

<표 III-9>는 당해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을 보여 준다. 본 현장에서의 현재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1월~1년 미만'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년~2년 미만'이 6.6%로 나타났다. 7일 미만과 2년 이상은 없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경우 '1년~2년 미만'이 9.4%로 아파트현장에 비해 많다.

<표 III-9> 공종별 본 현장에서 현재까지 근로기간 분포

(단위 : 일)

특 성 \ 본 현장에서 근로기간	계	도 로	아파트
계	100.0	100.0	100.0
7일 미만	0.0	0.0	0.0
7일~1월 미만	2.6	3.8	0.0
1월~1년 미만	90.8	86.8	100.0
1년~2년 미만	6.6	9.4	0.0

<표 III-10>은 현장 위치와 주소지를 비교하고 있다. 충북 단양 현장의 응답자는 모두 대전·충청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 포천·파주 현장의 경우 72.7%, 경북 칠곡·성주 현장의 경우 60.0%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해, 전북 임실 현장의 경우 27.3%만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가 경북이나 전북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상당수의 응답자는 거주지 부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현장 위치와 응답자 주소지의 비교

(단위 : %)

응답자 주소지 \ 현장 위치	계	서울·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	강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포천·파주	100.0	72.7	6.8	2.3	2.3	0.0	15.9
충북 단양	100.0	0.0	100.0	0.0	0.0	0.0	0.0
경북 칠곡·성주	100.0	11.4	8.6	60.0	14.3	2.9	2.9
전북 임실	100.0	18.2	13.6	22.7	27.3	18.2	0.0

<표 III-11>은 응답자의 숙소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 중 37.4%만이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62.6%의 응답자는 현장 숙소에서 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위치별로는 경기 포천과 전북 임실의 경우 현장 숙소에서 묵는 응답자의 비율이 100.0%로 나타난 데 비해, 충북 단양과 경기 파주의 경우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0.0%와 83.3%

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도로공사현장의 현장 숙소에서 묵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0.5%로 나타나 아파트현장의 19.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로현장이 상대적으로 오지(奧地)에 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숙련 수준별로는 일반공의 경우 현장 숙소에서 묵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비숙련 인력의 경우 대체성이 높아 현장 인근에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일한 이유로 일반건설업체의 직영 소속 응답자의 경우 현장 숙소에서 묵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 현재의 숙소 분포

(단위 : %)

특 성		현재의 숙소	계	현장 숙소	자택
계			100.0	62.6	37.4
현장 위치	경기 포천		100.0	100.0	0.0
	경북 칠곡		100.0	86.7	13.3
	충북 단양		100.0	0.0	100.0
	전북 임실		100.0	100.0	0.0
	경기 파주		100.0	16.7	83.3
	경북 성주		100.0	65.0	35.0
공 종	도로		100.0	80.5	19.5
	아파트		100.0	16.7	83.3
숙련 수준	조공 또는 일반공		100.0	42.1	57.9
	준기공		100.0	71.4	28.6
	기능공		100.0	68.4	31.6
	반장, 팀장 등		100.0	63.6	36.4
소속 형태	일반건설업체 직영		100.0	38.5	61.5
	전문건설업체 직영		100.0	70.0	30.0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100.0	91.7	8.3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100.0	55.0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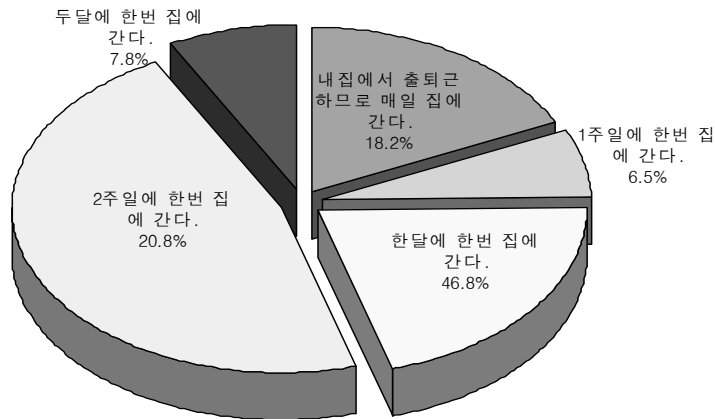
<표 III-12>는 응답자의 귀가 횟수를 보여 준다. 응답자 전체적으로는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는 응답이 36.4%, ‘한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34.6%, ‘2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15.0%의 순이며,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도 5.6%에 이른다. 현장 위치별로는 거주지가 인근이 응답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북 임실의 경우 ‘한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고,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도 18.2%에 이른다. 자택에서 출퇴근한다는 응답자는 없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경

우 ‘한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46.8%, ‘2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이 20.8%,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는 응답이 18.2%의 순이며,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는 응답도 7.8%에 이른다(그림 Ⅲ-1 참조). 요컨대, 도로현장의 응답자 중 약 55%는 한달 또는 두 달에 한번 귀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가정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짐작된다. 숙련 수준별로는 기능공이나 반장의 경우 귀가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표 Ⅲ-12> 귀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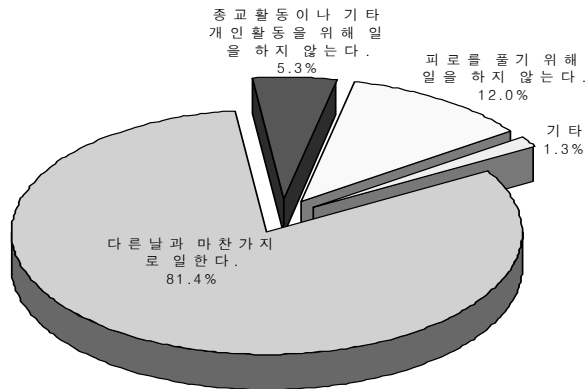
(단위 : %)

특성		귀가 횟수					
		계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	1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	2주일에 한번 집에 간다.	한 달에 한번 집에 간다.	두 달에 한번 집에 간다.
계		100.0	36.4	8.4	15.0	34.6	5.6
현장위치	경기 포천	100.0	0.0	7.1	35.7	50.0	7.1
	경북 칠곡	100.0	6.7	6.7	46.7	40.0	0.0
	충북 단양	100.0	100	0.0	0.0	0.0	0.0
	전북 임실	100.0	0.0	0.0	9.1	72.7	18.2
	경기 파주	100.0	83.3	13.3	0.0	3.3	0.0
	경북 성주	100.0	35.0	15.0	10.0	35.0	5.0
공종	도로	100.0	18.2	6.5	20.8	46.8	7.8
	아파트	100.0	83.3	13.3	0.0	3.3	0.0
숙련수준	조공 또는 일반공	100.0	57.9	0.0	21.1	15.8	5.3
	준기공	100.0	28.6	28.6	28.6	14.3	0.0
	기능공	100.0	29.8	12.3	14.0	36.8	7.0
	반장, 팀장 등	100.0	36.4	0.0	9.1	50.0	4.5



<그림 Ⅲ-2>와 <표 Ⅲ-13>은 현재 일요일의 활동 상황을 보여 준다. 응답자 중 59.6%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한다', 30.8%는 '피로를 풀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7.7%는 '종교 활동이나 기타 개인 활동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일요일에 일한다는 응답자는 59.6%, 쉬는 응답자는 38.5%이다. 공종별로는 현장 숙소에서 묵으며 귀가 횟수가 적었던 도로현장의 경우 81.4%의 응답자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한다'고 응답한 반면, 아파트현장의 경우 3.4%만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숙련 수준별로는 일반공의 경우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대별로는 일관된 경향은 없으나 60대 이상 응답자 중 일요일에도 일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0.0%로 높게 나타났다. 숙소 형태별로는 현장 숙소에 묵고 있는 응답자 중 73.8%가 일요일에도 일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응답자 중에는 35.9%가 일요일에도 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Ⅲ-2> 현재 일요일 활동 상황 : 도로현장 응답자



<표 Ⅲ-13> 현재 일요일의 활동 상황

(단위 : %)

일요일 활동		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한다.	종교 활동이나 기타 개인 활동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피로를 풀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기타	
특 성		계	100.0	59.6	7.7	30.8	2.0
공종	도 로	100.0	81.4	5.3	12.0	1.3	
	아파트	100.0	3.4	13.8	79.3	3.4	
숙련 수준	일반공	100.0	50.0	22.2	27.8	0.0	
	준기공	100.0	57.1	14.3	28.6	0.0	
	기능공	100.0	63.6	1.8	32.7	1.8	
	반장, 팀장 등	100.0	59.1	9.1	31.8	0.0	
연령대	20대	100.0	28.6	28.6	28.6	14.3	
	30대	100.0	69.2	12.8	17.9	0.0	
	40대	100.0	60.6	3.0	33.3	3.0	
	50대	100.0	45.0	0.0	55.0	0.0	
	60대 이상	100.0	80.0	0.0	20.0	0.0	
숙소	현장숙소	100.0	73.8	3.1	21.5	1.5	
	자택	100.0	35.9	15.4	46.2	2.6	

3.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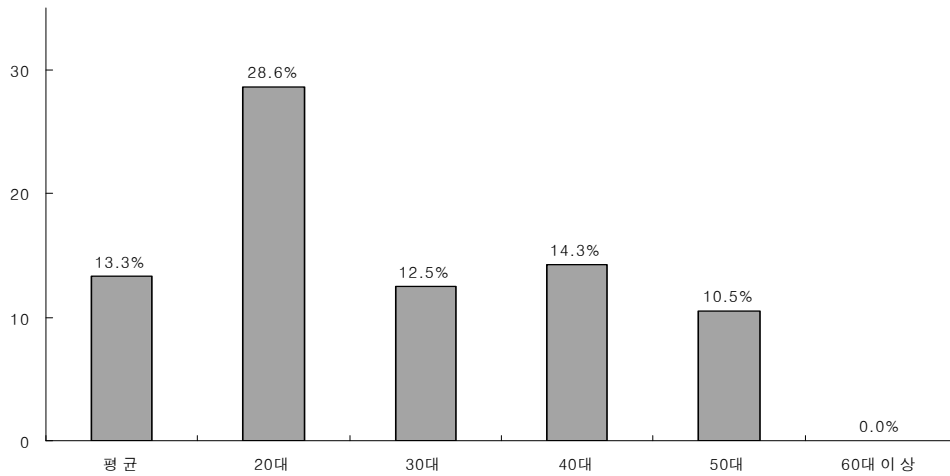
다음은 본 연구의 주제인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차례이다. <표 III-14>를 통해 일요휴무 주장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주휴일 수당을 주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4.8%,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3%인데 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친다. 공종별로 별 차이가 없다. 숙련 수준별로는 반장의 경우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2.7%에 달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그림 III-3>에서도 보듯이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요휴무제 실시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숙소 형태별로는 현장 숙소에 묵고 있는 응답자가 ‘주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16.9%)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고 있다.

<표 III-14> 일요일 휴무 주장에 대한 인식

(단위 : %)

특 성		일요휴무 주장에 대한 인식		계	주휴일 수당을 주면 찬성한다.	주휴일 수당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평 균					
공종		도로		100.0	84.8	13.3	1.9
		아파트		100.0	82.9	14.5	2.6
숙련수준		조공 또는 일반공		100.0	89.7	10.3	0.0
		준기공		100.0	89.5	10.5	0.0
		기능공		100.0	100.0	0.0	0.0
		반장, 팀장 등		100.0	83.9	12.5	3.6
연령대		20대		100.0	77.3	22.7	0.0
		30대		100.0	71.4	28.6	0.0
		40대		100.0	85.0	12.5	2.5
		50대		100.0	85.7	14.3	0.0
		60대이상		100.0	84.2	10.5	5.3
숙소		현장숙소		100.0	100	0.0	0.0
		자택		100.0	80.0	16.9	3.1
				100.0	92.5	7.5	0.0

<그림 III-3> 일요휴무 주장에 대해 ‘무급’이라도 찬성하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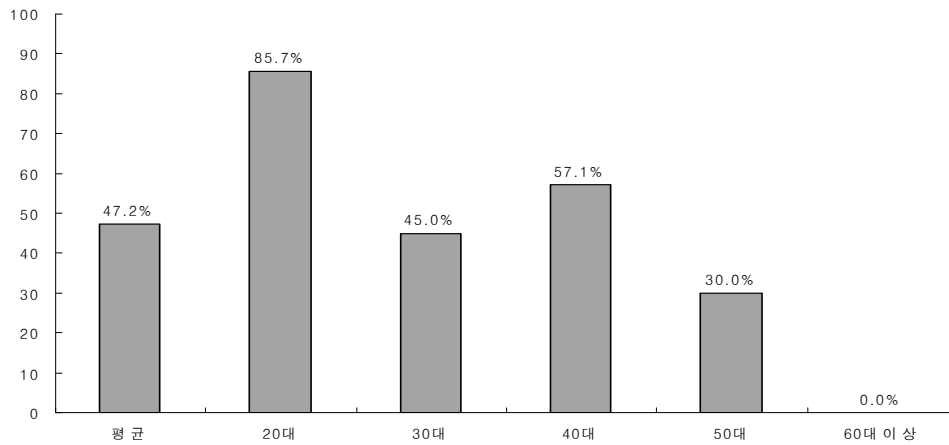
<표 III-15>는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보여 준다. ‘소득을 떨어뜨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0.9%,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다. 공중별로는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도로현장에서는 41.6%가 선택하고, 아파트현장에서는 62.1%가 선택하여 아파트현장에서 무급이더라도 일요휴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그림 III-4>에서도 보듯이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 비율이 높다. 따라서 젊은 층일수록 일요휴무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짐작하게 한다. 숙소 형태별로는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응답자의 경우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현장 숙소에서 묵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약간 더 많다.

<표 Ⅲ-15>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단위 : %)

무급 일요휴무제 실시에 대한 견해		계	소득 저하로 가족 생계를 위협하므로 반대한다.	소득 저하되더라도 피로가 회복되므로 찬성한다.	기타
특 성	계				
계		100.0	50.9	47.2	1.9
공 종	도 로	100.0	55.8	41.6	2.6
	아파트	100.0	37.9	62.1	0.0
연령대	20대	100.0	14.3	85.7	0.0
	30대	100.0	55.0	45.0	0.0
	40대	100.0	40.0	57.1	2.9
	50대	100.0	70.0	30.0	0.0
	60대 이상	100.0	75.0	0.0	25.0
숙 소	현장숙소	100.0	53.0	43.9	3.0
	자 택	100.0	47.5	52.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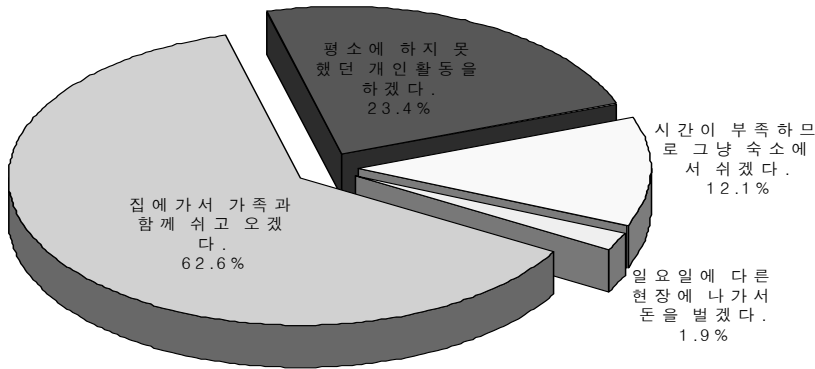
<그림 Ⅲ-4> '무급' 일요휴무제의 의무적 실시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연령대별 비율



<그림 Ⅲ-5>와 <표 Ⅲ-16>은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을 보여 준다.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는 응답이 62.6%,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23.4%, '하루만 쉬어서는 집에 다녀오기 어려우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12.1%로 나타나 응답자의 98.1% 쉬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은 1.9%에 그친다. 공중별로는 도로현장의 경우 ‘하루만 쉬어서는 집에 다녀오기 어려우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는 항목을 15.6%의 응답자가 선택해 아파트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아파트현장의 경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36.7%로 도로현장에 비해 높고 다른 현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응답도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나 미혼이 많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일요일에 개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숙소 형태별로는 현장 숙소에 묵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하루만 쉬어서는 집에 다녀오기 어려우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19.4%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표 III-16> '유급' 일요일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단위 : %)

특 성		유급 일요일무제 활동	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	일요일에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
		계					
계			100.0	62.6	23.4	12.1	1.9
공 종	도 로		100.0	64.9	18.2	15.6	1.3
	아파트		100.0	56.7	36.7	3.3	3.3
연령대	20대		100.0	57.1	42.9	0.0	0.0
	30대		100.0	50.0	27.5	20.0	2.5
	40대		100.0	74.3	20.0	5.7	0.0
	50대		100.0	70.0	15.0	10.0	5.0
	60대 이상		100.0	60.0	20.0	20.0	0.0
숙 소	현장숙소		100.0	65.7	13.4	19.4	1.5
	자 택		100.0	57.5	40.0	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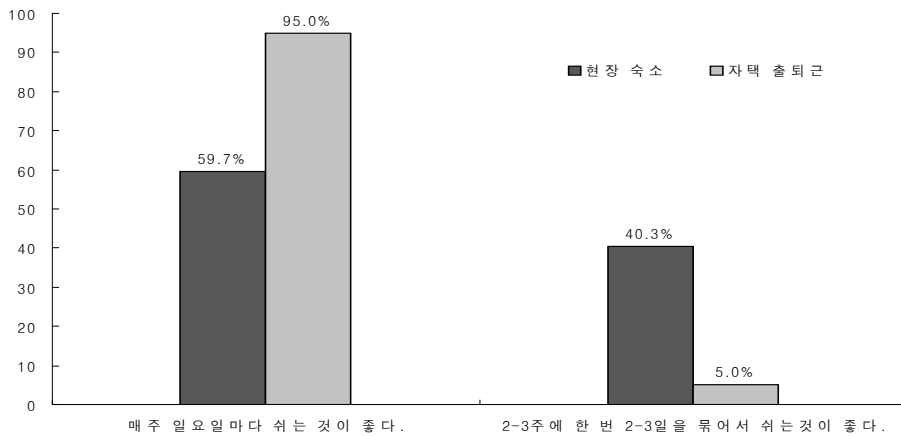
<표 III-17>은 '유급' 일요일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을 보여 준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72.9%,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경우 거주지와의 거리가 먼 응답자들이 많으므로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37.7%로 나타나는 데 비해, 아파트현장의 경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100.0%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경우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5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그림 III-6>에서도 보듯이 숙소 형태별로는 현장 숙소에 묵고 있는 응답자들이 경우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40.3%로 나타나는 데 비해, 아파트현장의 경우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95.0%를 차지한다.

<표 Ⅲ-17>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단위 : %)

일요휴무 방식		계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
특 성		계	72.9	27.1
공 종	도 로	100.0	62.3	37.7
	아파트	100.0	100.0	0.0
연령대	20대	100.0	85.7	14.3
	30대	100.0	50.0	50.0
	40대	100.0	91.4	8.6
	50대	100.0	75.0	25.0
	60대 이상	100.0	100.0	0.0
숙 소	현장숙소	100.0	59.7	40.3
	자 택	100.0	9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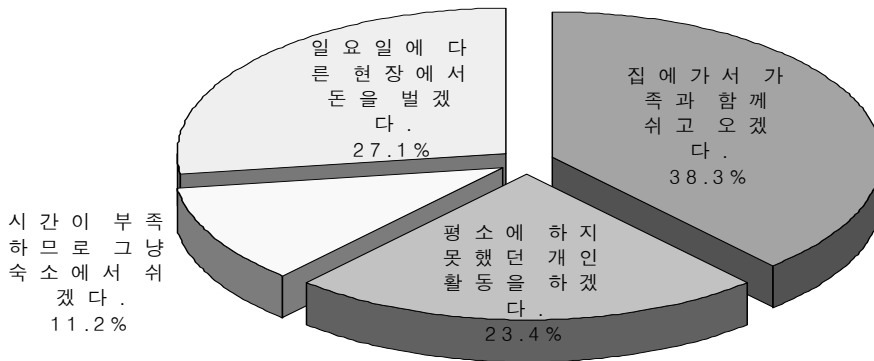
<그림 Ⅲ-6>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희망하는 휴무 방식 : 숙소 형태별



<그림 Ⅲ-7>과 <표 Ⅲ-18>은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을 보여 준다.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는 응답이 38.3%(62.6%),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이 27.1%(1.9%),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23.4%(23.4%), '하루만 쉬어서는 집에 다녀오기 어려우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11.2%(12.1%) 순으로 나타난다. () 안은 '유급'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고 그 만큼의 응답이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으로 옮겨갔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일요일휴무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경우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이 31.2%에 달해 16.7%인 아파트현장의 응답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숙소 형태별로는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에 대해 유사한 비율이 나타났다.

<그림 III-7> '무급'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표 Ⅲ-18>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단위 : %)

특 성		무급 일요휴무제 활동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	일요일에 다른 현장에서 돈을 벌겠다.
		계	계				
계			100.0	38.3	23.4	11.2	27.1
공 종	도로		100.0	39.0	15.6	14.3	31.2
	아파트		100.0	36.7	43.3	3.3	16.7
연령대	20대		100.0	42.9	42.9	0.0	14.3
	30대		100.0	22.5	25.0	15.0	37.5
	40대		100.0	51.4	20.0	11.4	17.1
	50대		100.0	45.0	25.0	10.0	20.0
	60대 이상		100.0	40.0	0.0	0.0	60.0
숙 소	현장숙소		100.0	41.8	14.9	16.4	26.9
	자 택		100.0	32.5	37.5	2.5	27.5

<표 Ⅲ-19>는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계속 일할 의사 유무에 대한 견해이다. '팀장이나 동료들이 참고 일한다면 나도 그냥 일요일에 쉬면서 일하겠다'는 응답이 75.2%, '팀장이나 동료들이 참고 일해도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겠다'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인맥으로 짜여진 팀 단위의 활동이 일반적이므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공종별로는 아파트현장의 경우 '팀장이나 동료들이 참고 일해도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겠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나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 '팀장이나 동료들이 참고 일한다면 나도 그냥 일요일에 쉬면서 일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9>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계속 일할 의사 유무에 대한 견해

(단위 : %)

특 성		무급 일요휴무제 계속 근무 의사		동료들이 참고 일한다면 나도 참고 일한다.	동료들이 참고 일해도 나는 웁기겠다.	기타
		계	계			
계			100.0	75.2	23.8	1.0
공 종	도로		100.0	76.3	22.4	1.3
	아파트		100.0	72.4	27.6	0.0
연령대	20대		100.0	71.4	28.6	0.0
	30대		100.0	69.2	30.8	0.0
	40대		100.0	79.4	17.6	2.9
	50대		100.0	75.0	25.0	0.0
	60대 이상		100.0	100.0	0.0	0.0

4. 일요휴무제 실시의 긍정적 영향

다음은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제 일요휴무제를 시범 실시했었던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결과에서 보다 직접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한 현장이 적고 기간도 짧아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에게는 경험담보다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심층면담조사 결과

먼저 현장 관리자들과의 심층면담조사에서 수집한 품질, 능률,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자. 일요휴무제를 시행해 본 현장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모두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이란 능률이 오르고 안전사고가 줄며 품질이 나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영향은 일요휴무제가 어느 정도 시행된 후 집이 가까운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고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계량화하여 비교할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면담에 응한 관리자나 관리자들은 일요휴무제가 정착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보다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⁵⁾

5) 사실상 일요휴무제의 실시를 가장 반겼던 근로자들은 원수급업체의 정규 직원들이었다고 한다. 300인 미만인 원수급업체는 아직까지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이전에는 월

한편, 감리자에게서는 감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었다. 일요휴무를 하더라도 감리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한다. 일요휴무가 아니더라도 감리자는 보통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검측이 필요한 작업은 토요일에 마치거나 월요일로 미루게 된다. 하지만 대개의 현장에서는 일요일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때 감리자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일요휴무제를 시범 실시했던 현장의 감리자는 일요휴무를 통해 일요일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어 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건설업체의 관리자는 실제로 일요일에도 교대로 출근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요일에는 주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없는 작업을 주로 시킨다고 한다. 즉, 정리정돈 또는 다음 주의 작업준비와 같은 일을 시킨다고 한다. 또한 건축현장의 경우 일요휴무제가 아니더라도 일요일에는 평일에 비해 약 50% 정도의 근로자들만이 나온다고 한다.

심층면담조사에서 만난 2개의 작업 팀 소속 근로자들은 주휴일 수당이 주어질 경우 일요휴무를 통해 피로 회복, 가족 화목 도모, 능률 제고에 따른 처리 물량 증대, 품질 제고, 산재 감소 등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었다. 일요일 주휴일 수당이 확보된다면 집에 가서 가족과 일요일을 보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비가 오면 쉬는데 이것은 불규칙적이고 일하다가 비가 오기도 해 그 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주휴일 수당을 주면서 규칙적으로 일요일마다 쉬라고 한다면 토요일 작업 후 집에 가서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60대를 넘긴 근로자들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자신들의 생전에는 주휴일 수당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후배근로자들이라도 ‘노가다’ 소리를 듣지 않게 주휴일 수당이 보장된 일요휴무제를 반드시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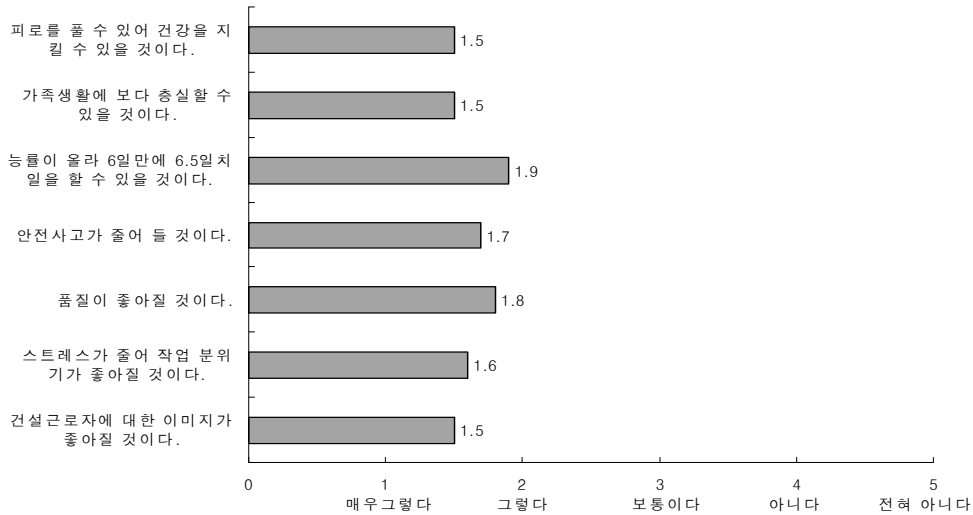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III-8>은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장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동 문항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긍정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모든 항목에 대해

2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으로 지정되면서 원수급업체의 관리자들은 월급의 저하 없이 월4일 휴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발주자나 본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주 일요일마다 쉴 수 있었으며 그야말로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요휴무제 시범실시가 끝나면서 다시 월2일 휴무제로 되돌아갔고 이때 직원들의 아쉬움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이것은 일요휴무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매우 그렇다’(1점)와 ‘그렇다’(2점)에 응답하여 평균 점수가 1.5점에서 1.9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 점수는 1.7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도가 높아 1.5점을 기록한 항목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이다.

〈그림 III-8〉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장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표 III-20〉은 특성별 인식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공종별로는 도로현장의 응답자들은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항목에 가장 긍정도가 높아 1.4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비해 아파트현장의 응답자들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와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에 1.4점을 주어 긍정도가 가장 높다. 숙련 수준별로는 일반공의 긍정도가 가장 높아 전체 평균이 1.4점으로 나타났다. 일반공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줄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에 대해 1.3점을 주어 긍정도가 높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점수가 1.4점으로 가장 긍정도가 높다. 이들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안전사고가 줄어 들 것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에 대해 1.3점을 주어 긍정도가 높다. 경력규모별로는 30년 이상 응답자의 점수가 1.4점으로 가장 긍정도가 높다. 이들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줄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건설근

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에 대해 1.3점을 주어 긍정도가 높다. 소속 형태별로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영인 응답자의 점수가 1.4점으로 가장 긍정도가 높다. 이들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줄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등에 1.3점을 주어 긍정도가 높다.

<표 III-20>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장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단위 : 점)

특성 \ 장점		전체 평균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능률이 올라 6일 만에 6.5일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사고가 줄어 들 것이다.	품질이 좋아질 것이다.	스트레스가 줄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평균		1.7	1.5	1.5	1.9	1.7	1.8	1.6	1.5
공종	도로	1.7	1.5	1.4	1.9	1.8	1.9	1.6	1.5
	아파트	1.6	1.4	1.6	1.9	1.5	1.6	1.5	1.4
숙련 수준	일반공	1.4	1.3	1.4	1.5	1.5	1.4	1.3	1.3
	준기공	2.0	2.0	1.7	2.4	2.0	2.0	1.9	2.1
	기능공	1.6	1.5	1.5	1.8	1.7	1.9	1.6	1.5
	반장 등	1.7	1.5	1.5	2.1	1.8	1.8	1.6	1.5
연령 대	20대	1.4	1.3	1.4	1.4	1.3	1.7	1.4	1.3
	30대	1.6	1.4	1.5	1.8	1.8	1.9	1.6	1.5
	40대	1.6	1.5	1.4	2.0	1.6	1.7	1.5	1.4
	50대	1.8	1.7	1.6	2.1	1.9	1.6	1.7	1.7
	60대이상	1.7	1.6	1.8	1.8	1.8	1.6	1.6	1.6
경력 규모	2-5년	1.6	1.4	1.4	1.8	1.6	1.8	1.5	1.4
	6-9년	1.6	1.5	1.5	1.8	1.7	2.0	1.5	1.5
	10-19년	1.7	1.6	1.5	2.0	1.8	1.8	1.7	1.6
	20-29년	1.6	1.6	1.4	1.9	1.7	1.8	1.5	1.5
	30년 이상	1.4	1.3	1.5	1.5	1.7	1.5	1.3	1.3
소속 형태	일반건설업체의 직영	1.9	1.8	1.8	2.2	2.0	2.0	1.7	1.8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1.4	1.3	1.3	1.6	1.6	1.6	1.3	1.3
	일반건설업체 투입 작업팀	2.2	2.2	1.7	2.6	2.4	2.4	2.3	2.0
	전문건설업체 투입 작업팀	1.5	1.4	1.5	1.8	1.5	1.7	1.5	1.4

5. 일요휴무제 실시의 부정적 영향

이번에는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옥외생산이라는 특성과 그 동안의 일요일 작업 관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건의 조성이 없이 일부 시범현장을 지정해 그 곳에 대해서만 일요일 현장 폐쇄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1) 심층면담조사 결과

심층면담조사에 나타난 부정적 영향은 주로 공기 및 원가 부족, 작업의 연속성 침해, 근로자들의 소득 저하에 대한 반발, 다단계 하도급 및 보상요인의 잔존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1) 공사기간 부족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르는 별도의 공기 연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계에 일요일을 휴무일로 반영한 경우에는 이론상으로는 일요휴무에 따른 공기연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는 작업불가능일에는 대개 일정 기상조건-비, 눈, 바람, 온도 등-에 해당하는 날과 법정 공휴일 등이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세부적인 자료를 입수할 수는 없었으나 기후조건에 의한 작업불능일수를 대략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었다. 대체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60~118일 정도 그리고 도로현장의 경우 103~118일의 작업불능일수를 상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사업주가 알고 있는 계약공기에는 대개는 월 25일을 평균적인 작업일수로 상정하고 있거나 단지 일정 날수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이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감리자나 시공자 모두 관행적으로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보완 조치 없이 일요일에 무조건 현장을 폐쇄한 시범현장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왜냐하면 공사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에서 공정이 진행되므로 일요일 휴무가 가능하나 준공 시기가 다가올수록 공사기간 중 잃어버렸던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일요일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현장의 경우에는 용지보상 등의 업무가 시공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공 이외의 요인인 보상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잦아 더더욱 일요일 작업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요일 작업을 엄두에 두고 시공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여건은 그대로 두고 시범 현장에 대해서만 일요일에 현장을 폐쇄하도록 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졌던 것이다. 특히 공사 수행 중에 시범 현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기 부족 현상이 더욱 명백히 나타났고 결국 일요일휴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

2) 공사원가 상승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범실시 기간 중에 일요일휴무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곳이 많지 않아 원가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엄격하게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장비임대료 또는 간접노무비 등에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건설현장의 장비는 일단위로 임대하기보다는 월단위로 임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는 지불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요일휴무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장비임대료의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장비임대료를 보전한 경우는 없었다.

3) 작업의 연속성 침해에 의한 부작용

일요일 하루를 강제로 휴무할 경우 작업의 연속성이 저하되어 그 여파가 1일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인접 작업 예컨대 목공, 전기배선공 등과의 연계가 곤란해질 경우에는 2~3일의 공기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속성 유지가 매우 특히 중요한 공종 또는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 교량공사, 터널공사, 골조공사 등이다. 특히, 터널공사에 돌입하면 점보드릴의 월임대료가 매우 고가-하루 2,000만원 소요-이어서 일요일에도 작업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월요일 작업에서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주로 일요일휴무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히, 집이 먼 근로자들이 집에 가지 못한 채 제대로 쉬지 않고 과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심층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일요일에 공급이 중단되는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중단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레미콘은 건축현장과 토목현장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인데 전국적으로 첫째와 셋째 일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대개 건축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노조의 영향력이 센 곳에서는 매 일요일마다 타워크레인의 작동이 중단된다고 한다. 이렇게 레미콘과 타워크레인의 활용이 어려운 일요일에는 관련 작업을 하지 않도록 미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 따

라서 공정계획을 잘 작성하면 일요일휴무에 따른 공정관리상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일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라 1주일에 7일에서 6일로 작업일수가 줄어들자 건설업체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는 연장 작업을 실시하여 공기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4) 일요일 소득 감소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반발

금번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 기간 중 그에 따른 임금 보전은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일요일휴무제의 실시가 일요일 일당을 못 받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동일 발주자의 2개의 공구가 나란히 붙어 있는 현장 중 하나는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하고 다른 하나는 실시하지 않자 일요일휴무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한다.

한편,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근의 다른 현장을 물색하여 일요일에는 그 현장에서 일해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줄여보려는 일요일휴무제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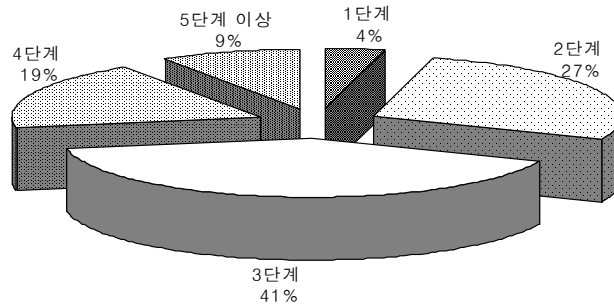
나아가 도로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집이 아닌 숙소나 여관에서 묵고 있는 타지인들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쉬는 일요일-현장 근로자의 표현으로 '물밥을 먹는다'라고 함-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욱 심했다. 주휴일 수당의 지불 없이 일요일휴무제를 엄격하게 실시한 현장의 경우 약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요일휴무제 실시에 반발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5) 다단계 하도급구조 하에서의 일요일휴무제 추진 곤란

심층면담조사 결과 현장의 감리자, 관리자,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시공단계에서 활용할 공사비가 잠식되어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할 여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공사비가 줄어들어 실공사비가 누수 되기 때문이다. 결국 최말단의 작업팀은 적정 실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할 여유가 사라지게 된다. 단기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낮아진 공사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5~7단계 정도의 하도급구조가 존재한다고 한다. 심규범 외(2003)에 의하면 <그림 III-9>에서 보듯이 하도급 단계 수에 대해 설문에 응한 업체의 40.6%는 3단계(일반 → 전문 → 심장 → 심장)에 걸쳐 도급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하도급 단계 수는 십장의 특성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하다. 하지만 4단계라는 응답 비율도 18.9%나 되었으며, 5단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9.1%에 달한다. 요컨대, 설문에 응한 십장의 70% 정도는 자신의 상위 도급단계에 또 다른 십장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9> 십장이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 단계 수



자료 : 심규범 외(2003) 참조

<표 Ⅲ-21> 십장이 공사를 수주하는 하도급 단계 수

(단위 : 명, %)

항목		응답자수	구성비
계		175	100.0
1단계	일반→십장	7	4.0
2단계	일반→전문→십장	48	27.4
3단계	일반→전문→십장→십장	71	40.6
4단계	일반→전문→십장→십장→십장	33	18.9
5단계 이상	일반→전문→십장→십장→십장→...	16	9.1

자료 : 심규범 외(2003) 참조

또한 심규범·김지혜(2004)에 의하면 낮은 낙찰률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제 공사비가 정상적인 직접공사비 이하로 잠식된 경우 건설업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직접 공사비를 낮추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자 장시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유발될 수밖에 없어 실근로시간 단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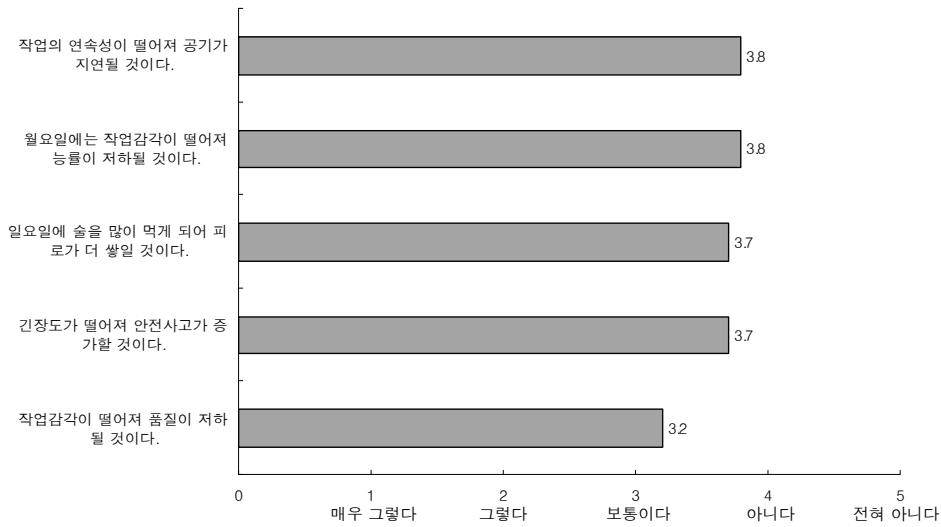
6) 용지 보상 등 공기 지연 요인의 상존

특히 도로현장의 심층면담조사 결과 현장의 감리자나 관리자는 시공 과정에 시공 자체와 무관한 공기 지연 요인이 상존해 준공이 가까워질수록 일요휴무의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 시공 자체와 무관한 공기 지연 요인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상 업무 또는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처리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공사 이외의 업무로 공기를 지연시킬 경우 계약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요휴무를 실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현장 중 한 곳은 용지 보상 지연으로 실질적인 착공은 최근에 이루어졌고 아직도 2/3의 용지 보상 업무가 남아 있었다.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III-10>에서 보듯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역시 5점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부정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모든 항목에 '보통이다'(3점)와 '아니다'(4점)에 응답하여 평균 점수가 3.2점에서 3.8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도가 높아 3.8점을 기록한 항목은 '작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공기가 지연될 것이다'와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이다. 상대적으로 부정도가 낮아 3.2점을 기록한 항목은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이다.

<그림 III-10> 건설현장 일요일무제의 단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표 III-22>는 특성별로 인식 차이를 보여 준다.工种별로는 아파트현장의 응답자들의 점수가 3.9점으로 부정도가 더 강하다. 가장 부정도가 강한 항목은 ‘일요일에 술을 많이 먹게 되어 피로가 더 쌓일 것이다’(4.0점)이다. 숙련 수준별로는 일반공의 부정도가 가장 높아 전체 평균이 3.8점으로 나타났다. 일반공은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 ‘긴장도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다’,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에 3.9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부정도가 높다. 이들은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와 ‘일요일에 술을 많이 먹게 되어 피로가 더 쌓일 것이다’에 4.1점 그리고 ‘긴장도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다’와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에 4.3점을 주어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경력 규모별로는 30년 이상 응답자의 점수가 3.9점으로 가장 긍정도가 높다. 이들은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와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에 4.2점을 주어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소속 형태별로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영인 응답자의 점수가 3.9점으로 가장 부정도가 높다. 이들은 ‘긴장도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다’와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에 4.1점을 주어 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단점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단위 : 점)

특성		단점	전체 평균	작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공기가 지연될 것이다.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	일요일에 술을 많이 먹게 되어 피로가 더 쌓일 것이다.	긴장도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다.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평균			3.6	3.2	3.7	3.7	3.8	3.8
공종	도로		3.7	3.1	3.7	3.6	3.8	3.8
	아파트		3.9	3.5	3.8	4.0	3.9	3.9
숙련 수준	일반공		3.8	3.4	3.9	3.7	3.9	3.9
	준기공		3.3	2.7	3.3	3.9	3.3	3.3
	기능공		3.7	3.2	3.7	3.8	3.9	3.9
	반장 등		3.7	3.2	3.8	3.5	3.9	3.9
연령 대	20대		3.0	2.3	3.1	3.1	3.4	3.1
	30대		3.5	3.0	3.6	3.5	3.6	3.7
	40대		4.1	3.8	4.1	4.1	4.3	4.3
	50대		3.4	3.0	3.4	3.6	3.6	3.4
	60대 이상		3.6	2.8	4.0	3.2	4.0	4.0
경력 규모	2-5년		3.6	3.1	3.6	3.6	3.7	3.8
	6-9년		3.7	2.8	3.8	3.7	4.1	3.9
	10-19년		3.6	3.2	3.7	3.7	3.8	3.8
	20-29년		3.7	3.3	3.7	3.7	3.9	3.8
	30년 이상		3.9	3.8	4.2	3.7	3.8	4.2
소속 형태	일반건설업체 의 직영		3.6	2.8	3.8	3.6	4.0	3.9
	전문건설업체 의 직영		3.9	3.5	4.0	3.9	4.1	4.1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3.2	2.6	3.0	3.8	3.1	3.3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팀		3.5	3.1	3.6	3.6	3.7	3.6

6.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황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Ⅲ-2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Ⅲ-23> 일요휴무 시범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요약

당사자	관심 사항 및 판단 기준	일요휴무 실시 현황 및 영향 분석 결과	
정부	건설교통부	·일요휴무 실시로 건설생산성 제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신규인력 확보	·일요휴무의 실시 어려워 생산성 제고와 무관 ·이미지 개선 및 신규인력 확보에 기여하지 못함.
	노동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정착	·실질적인 일요휴무가 실시되지 못해 달성 못함.
	재정경제부	·적정 공사원가 반영	·일요휴무에 대한 공기 및 원가의 반영 없음.
발주자	·양질의 건설생산물 확보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양질의 건설생산물 확보에 영향 없음.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없음.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적정 공사비 미확보	
사용자	·적정 원가 및 기간 확보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주휴일 수당 산정 방법 및 적정 수준	·원가 및 기간에 일요휴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해 공기 및 원가가 부족했음 ·공정 초기에는 실시했으나 준공시기로 갈수록 일요휴무 실시 곤란, 일요일 작업 묵인함. ·대체로 최저가 낙찰로 적정 공사비 미확보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 미정착, 다만, 격주 일요일 레미콘 공급 중단에는 대비함. ·주휴일 수당 지급 사례 없음. ·일부이기는 하나 일요일에 휴식을 취한 경우 안전사고 감소 및 능률 향상 효과 발생 ·일요휴무로 관리자 없이 작업함으로써 발생 하던 안전사고 또는 부실공사 가능성은 감소 ·시범실시 현상이 일부에 그치고 한시적이므로 일요휴무제 실시 의식 미약 ·도로공사의 경우 용지보상 등 공기지연요인의 미해결로 공기가 부족해져 여건 미조성 ·다단계하도급구조에 의한 공사비 누수로 최 말단에서는 일요휴무 실시의 여력이 없음.	
근로자	·일요일 주휴일 수당 확보 ·피로 회복 ·가족의 화목 도모	·대체로 일요일 주휴일 수당의 미확보로 임금 감소 또는 다른 현장 작업으로 피로 회복과 무관 ·종일 우천시 무급이므로 일요일 휴무에 반발 ·일부이기는 하나 실제로 일요일을 쉬는 경우 개인의 피로 회복과 가족의 화목 도모에 기여	

제4장

관련 사례 연구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와 관련해 세 가지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일요휴무 사례, 독일의 주40시간제 실시 사례, 미국의 초과근로시간 영향 분석 결과 등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주휴일 수당을 지불하면서 일요휴무를 실시할 있는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독일의 건설공사에 휴무일을 공기와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과 현장에서의 공정관리 방법을 부족한 수준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분석 결과에서는 주당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일요휴무

포항지역의 플랜트 건설현장의 일요휴무 사례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한국 건설현장에서는 드물게 일요휴무제가 정착된 현장이자 최초로 일요휴무제를 시도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포항공단에서 시공하고 있는 원수급업체 및 협력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와 간략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일요휴무 실시 배경 및 관련 규정

포항지역의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일요휴무를 시작했던 시기는 1990년대 초라고 한다. 1989년 포항지역 건설일용노조가 성립되면서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도 포항공단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직종과 관련된 공사에만 일요휴무가 적용된다.⁶⁾ 예컨대, 용접, 배관, 제관, 전기, 보온 등의 직종이다.

6)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일반건설업체 본사 및 현장 관리직의 근로행태를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 넘는 본사는 대체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관리직은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대체로 월6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휴무일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 6일을 만근할 경우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해도 주휴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국경일 및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우천시에도 결근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휴일 수당 및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오전 10시까지 작업하면 0.5공수, 오후 3시까지 작업하면 1.0공수를 인정한다.

<포항지역 2004년도 단체협약> 중 관련 조항	
(교섭 당사자 :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전기통신업체, 정비업체, 소방업체 및 철구조물 전문제 작업체 vs.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제16조(근로시간)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한다.	
제17조(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시간 : 08:00, 종업시간 : 17:00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는 할 수 있다.)	
제18조(유급시간) 회사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측의 사유로 토요일에 작업을 못 할 시 4시간을 유급화 하고 주차를 지급한다. "동일 회사 사업장의 타 현장에 근로를 시킬 때는 노사협의하여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 토요일 작업시 현행대로 한다.	
2. 법정공휴일 : 1일 유급	
제19조(월차휴가)	
2.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휴업보장)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휴업하였을 경우 <u>오전 50%, 오후 100%의 휴업 보상을 지급한다.</u>	
2. 천재지변(비, 눈)(단, 회사요구사항 불이행시는 무급처리한다. 오전 10시, 오후 3시까지)	

(2) 근로 형태 일반

임금 형태, 지급 주기, 지급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반장급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제 월급 방식으로 당월의 임금을 익월의 일정일에 지급한다. 임금은 대체로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과거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약 6 대 4 정도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평일의 임금 지불 기준은 8시간을 기본 1공수로 본다. 토요일은 15시까지를 기본 1공수로 본다.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유사하다.

○ 평일 임금 지불 기준	○ 토요일 임금 지불 기준
- 08:00 ~ 17:00 : 1공수	- 08:00 ~ 15:00 : 1공수
- 18:00 ~ 20:00 : 0.5공수 추가 ⇒ 1.5공수	- 15:00 ~ 17:00 : 0.5 공수 추가 ⇒ 1.5공수
- 20:00 ~ 22:00 : 0.5공수 추가 ⇒ 2공수	- 회사 사정으로 휴무 실시 : 0.5공수 인정

(3) 일요일휴무 실시 현황 및 관련 사항

원칙적으로는 SD(shut-down) 공사 이외의 현장에서는 일요일에 거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SD(shut-down) 공사 중에는 불가피하게 일요일에도 작업을 한다. SD 공사란 용광로 또는 냉연설비의 교체 공사를 말한다. 이것은 당해 공장 전체의 가동을 중단시키므로 재가동까지의 기간 동안 엄청난 손실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할증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최단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기간 중에는 야간 및 일요일 작업이 불가피하다.

SD 공사 이외에는 일요일에 작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곤란한 측면이 많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일요일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부탁하였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일요일 근무를 부탁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더라도 작업조-배관공, 제관공, 용접공, 조공 등으로 구성-가 형성되지 않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휴일수당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채산성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면담조사에서 만난 사업주들은 하루 8시간 작업과 일요일 휴무가 가장 바람직한 작업 및 휴무 형태라고 말한다. 야간 작업 또는 일요일 작업은 임금 지출은 많으나 그만큼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해 공사에만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이 기간 중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한다. 예컨대, 밤샘작업을 하게 되면 5공수-8시간 기준 임금의 5배-의 할증임금이 지불되기도 하는데 실제 작업량은 평균 하루 작업량의 2배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로자들 역시 돈에 욕심이 나므로 야간 작업과 일요일 작업에 나오기는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품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간 작업 또는 휴일 작업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평일의 일반 작업시간에 투입량을 늘리려고 한다. 즉, 일요일에도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에서는 하루에 30명을 투입했다면 일요일휴무를 실시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40명을 투입하는 식이다. 한편 주중에 비가 자주 온 경우에는 공기 확보와 소득 확보를 위해 일요일 작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되어 근로자들은 2.5공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

다른 생산 요소의 일요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포항지역에서는 일요일에도 레미콘을 활용할 수 있으나 펌프카를 활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곤란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요일휴무에 따른 장비 임대료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크레인의 경우 업주 측과 일요일 휴무를 계약 조건에 명시한다면 일요일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400~500톤급 대형장비의 경우 월 8,000만원~1억원이 소요되는 것도 있으나 일요일 휴무를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월단위로 임대하는 장비의 경우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휴무한다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4) 일요휴무 실시의 영향

1) 심층면담조사 결과

일요휴무 실시의 효과에 대해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들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만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일요일 휴무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이것이 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이라고 생각했다. 개인 차이는 있으나 일요일을 제대로 쉬고 오면 당연히 작업 능률은 상승하게 되고 근로자의 피로가 회복되므로 산재가 감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발주자로부터 일요휴무에 상응하는 공기와 원가의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요휴무 실시의 효과에 대해 근로자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서 자녀들과의 놀이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원만한 가족생활'과 '계획 있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꼽았다. 또한 일요휴무가 정착된다면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일요일 음주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술을 마시더라도 편히 마시는 술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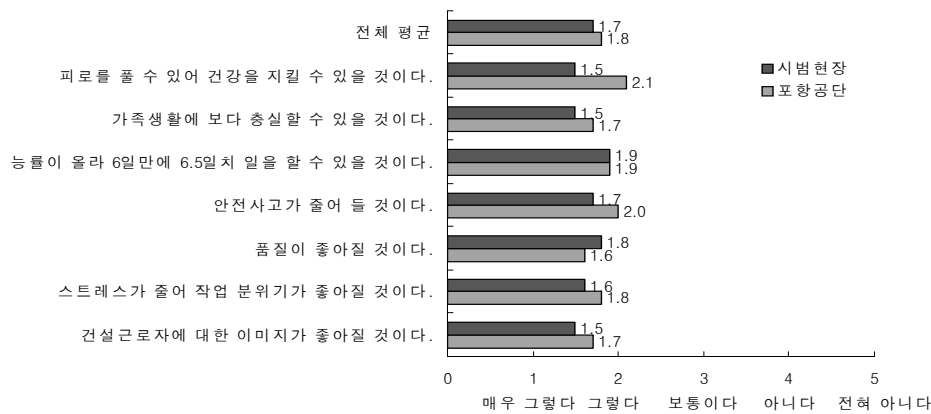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포항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포항공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실시한 이유는 일요휴무제 시범현장의 응답자들은 아직까지 실제로 일요휴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요휴무를 경험해 본 포항공단 근로자의 응답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요휴무제 실시의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IV-1>은 일요휴무제의 장점에 대한 시범실시 현장의 응답자와 포항 플랜트 건설현장의 응답자 인식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포항 플랜트 현장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모든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와 '그렇다'(2점)에 응답하여 평균 점수가 1.6점에서 2.1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 점수는 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요휴무제 시범현장의 1.7점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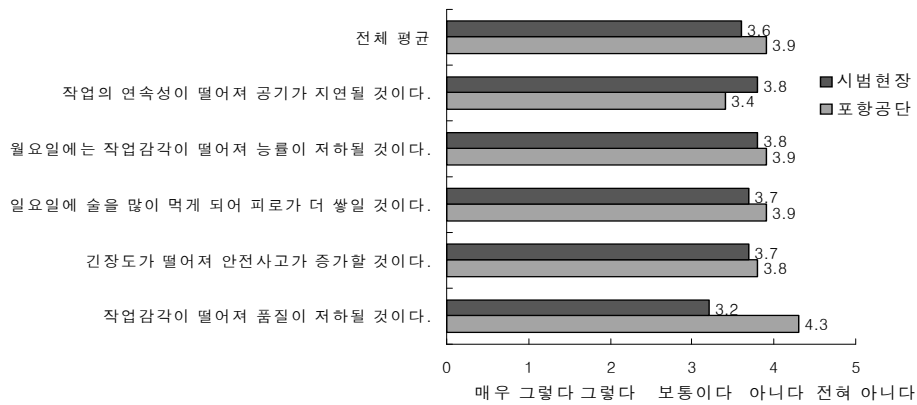
해 0.1포인트 높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가장 긍정도가 높아 1.6점을 기록한 항목은 ‘품질이 좋아질 것이다’(시범현장에서는 1.8점), 다음으로 1.7점을 기록한 항목은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시범현장에서는 1.5점),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시범현장에서는 1.5점) 등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도가 낮아 2.1점을 기록한 항목은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인데 이것은 일요일휴무제 시범현장에서는 긍정도가 가장 높아 1.5점을 기록한 항목이다.

<그림 IV-1> 일요일휴무의 장점에 대한 인식 : 포항공단과 시범현장 비교



한편 <그림 IV-2>는 일요일휴무제의 단점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포항 플랜트 현장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모든 항목에 ‘보통이다’(3점)와 ‘아니다’(4점)에 응답하여 평균 점수가 3.4점에서 4.3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도가 높아 4.3점을 기록한 항목은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로서 일요일휴무제 시범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도가 가장 낮아 3.2점을 기록한 항목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도가 낮은 항목은 3.4점을 기록한 ‘작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공기가 지연될 것이다’인데 이것은 일요일휴무제 시범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도가 높아 3.8점을 기록한 항목이다.

<그림 IV-2> 일요휴무의 단점에 대한 인식 : 포항공단과 시범현장의 비교



(5) 일요휴무 실시의 여건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은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장이다. 일요일 휴무 실시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인식도 양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에서 주휴일 수당을 지불하면서 실질적인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일까?

먼저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의 공사에 일요휴무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포항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도 일요휴무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다. 대체로 월 25일 정도의 작업일을 상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현재의 직접노무비 산정 방식은 품셈에 기초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평균 일일 임금을 곱하여 결정되는 방식으로 시범현장과 동일했다. 즉, 작업일수 이외에 일요일을 감안하여 매 6일마다 1일치의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돌관작업(고로 교체를 위한 shut-down 공사)을 수행할 때에는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산입될 뿐이었다.

심층면담조사 결과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에서 일요휴무가 가능한 여건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발주자와 원수급자가 무조건 최저가 낙찰로 가지 않고 공사가 중간에 타절되지 않을 정도로 최저수준이기는 하나 적정 공사비 수준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발주자로부터 원수급자가 받는 낙찰률이 대체로 78% 수준 정도라고 한다. 협력업체에서는 낙찰률을 알려주지 않으려 하나 대체로 공단 이외 지역의 일반 현장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둘째, 이 지역에서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정착되

어 사업주들이 이것을 공기와 원가 견적에 당연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하도급구조가 짧아 이것이 실공사비 잠식을 억제하고 주휴일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직종의 경우 하도급구조가 대체로 ‘발주자 - 원수급자 - 하수급자 - 과장 또는 이사 -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일반 건설현장에 비해 2~3단계 짧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포항 플랜트 현장의 사업주들은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기 및 원가의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정표에 ‘휴무일을 명시’하여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나 눈치 보지 않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노무비를 산정할 때 주차, 월차, 연차 휴가 등 모든 요소를 아울러 명시적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6) 시사점

포항 플랜트 건설현장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무급 일요휴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에도 일요일에 주휴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요휴무제가 정착되었던 것이지만 무급이었다면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유급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적정 수준의 공기 및 원가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주휴일 수당에 대한 원가 반영이 없이도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원수급자나 하수급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원가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주는 것이 일요휴무제 정착의 전제가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주6일을 작업일로 하더라도 직접노무비는 7일치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요휴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표에 일요일이 휴무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셋째, 일요휴무 실시의 일반화이다. 비록 포항지역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당해 지역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일요휴무의 실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구성원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모두가 일요휴무를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요휴무제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적정 공사비를 유지하려는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일요휴무의 실시가 정착되려면 주휴일 수당이 지불되더라도 공사가 수행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공사비를 유지하려는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무조건적인 최저가 경쟁은 주휴일 수당에 대한 지불 여력을 사라지게 해 일요휴무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다섯째, 우천시에 대한 처리 조항의 마련도 필요하다. 주중에 비가 오더라도 이를 결근처리 하지 않고 주휴일 수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요휴무의 실시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단순한 하도급구조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비해 하도급구조가 단순하고 이것이 실공사비 잠식을 억제하고 주휴일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합법적인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배달사고를 방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일요휴무의 실시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독일 건설현장의 공기 및 원가 산정 개요

이미 1992년부터 주39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건설공사에서 주휴일을 공기와 원가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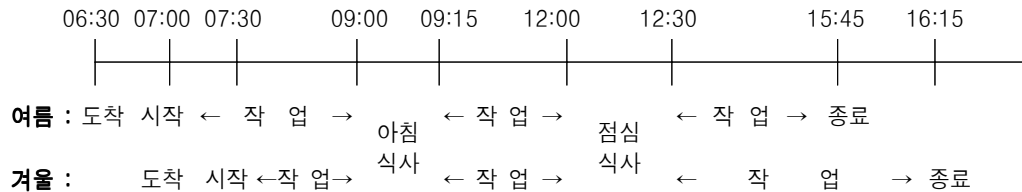
독일 건설산업의 근로시간은 정부의 법정 근로시간 규정보다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단축되어 왔다. 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⁷⁾ 생산직의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을 연방 경제노동성이 공표함으로써 단협외 양 당사자 단체에 대한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한다. 이것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의 실시 내용이 단협의 내용보다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 체결할 수 있다. 사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회원사와 노조원에게만 적용된다.

통상적인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다음과 같다. 여름에는 7시에 시작해 3시 45분에 종료하며, 겨울에는 7시 30분에 시작하여 4시 15분에 종료한다. 통상 작업시작 시간 30분

7) 심규범·김지혜(2004),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전에는 현장에 도착한다. 9시에 15분간의 아침식사를 하고, 12시에 30분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45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작업이 없다. 여름을 기준으로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통상 월 평균 21일 정도를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림 IV-3> 독일 건설근로자의 통상적인 작업시간



<표 IV-1> 독일 건설현장의 단체협약 근로시간

계절	주차	주당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연간평균 주당근로시간	연간평균 월근로시간
겨울	13 ~ 43 주	37.5 시간	162 시간	39 시간	169 시간
여름	44 ~ 12 주	40.0 시간	173 시간		

독일 건설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연간 1,768시간으로 산정된다. 결국 실근로일수는 약 200일 정도에 불과하다.

- 연간 협약 근로시간 : 169시간/월 × 12개월 = 2,028시간/연
- 연차휴가일수 차감 : 39시간/주 × 6주(30일) = 234시간/6주 ⇒ 1,794시간
- 법정휴일 차감 : (39시간 ÷ 5일) × 9일 ≒ 70시간 ⇒ 1,724시간
- 기후로 인한 작업불능시간 차감 : 46시간 ⇒ 1,768시간

(2) 공사기간 산정

공공 발주자가 근무일수를 책정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주당 평균 3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공사의 경우 교통량을 고려하여 주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는 초과근로수당이 함께 책정된다. 공기를 책정할 때에는 제일 먼저 일할 수 있는 날을 파악한다. 휴일과 기후에 의한 작업불능일을 체크한다. 예컨대,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콘크리트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날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대개 12월~2월은 작업기간에서 배제시킨다. 다만, 준공이 시급한 경우에는 2~3교대 또는 토요일 근무를 요구하기도 하고 도로 교통 체증이 우려될 경우에는 밤 작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고 임금은 초과수당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공기를 어길 경우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기연장도 가능하다.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법정공휴일 등의 휴무일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IV-4> 독일의 공정표 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작업일					휴무일		작업일					휴무일		작업일				

(3) 공사원가 산정

기간 및 원가 산정은 대개 지자체 등 발주자 내부의 설계부서에서 건축기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기도 한다. 임금에 대한 기준은 대개 단체협약에 의한 시간급이다. 이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다. 대개 발주자는 과거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요비용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표준 품셈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느 기관에서 발표하든 이것 자체가 담합의 요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노무비를 계상할 때 주차, 월차, 연차 휴가 등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 자재에 대한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장가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고 각종 사회보험료 역시 임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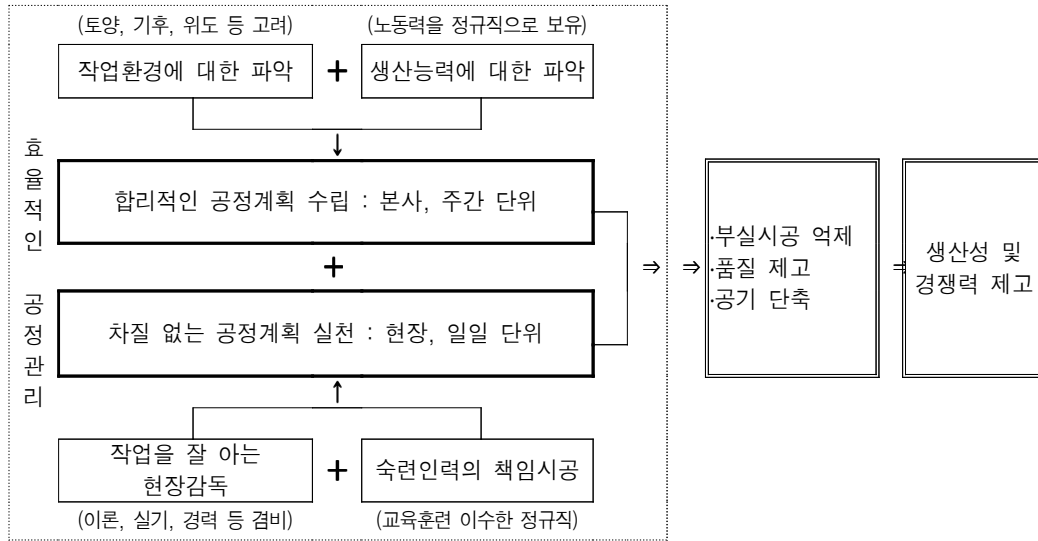
(4)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방법

독일 출장에서 만난 정부 공무원, 발주자, 사용자 및 단체, 근로자 및 단체의 담당자들은 건설

현장에 주39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생산성이 여타 유럽 제국에 비해 우수하다고 자랑하였다. 그리고 그 비결은 ‘공정관리의 효율성’이라고 한다.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림 IV-5>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공정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공정계획 실천’의 결합이다. 첫째,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작업 현장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의 능력’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현장의 토질, 토양, 기후, 위도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사 차원에서는 엔지니어가 주(週) 단위의 공정계획만을 수립하나 현장에서 경험많은 현장감독(polier 또는 meister)에 의해 철저하게 일(日) 단위로 공정관리가 이루어진다. 공사의 흐름을 감안하여 작업을 진행하는데 예컨대, 콘크리트 작업은 다른 작업과 병행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오후에 진행시키고 연속작업이 필요하므로 월요일에 배치한다. 둘째, 차질 없는 공정계획의 실천이다. 근로자를 대개 정규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관리 계획대로 공사를 수행한다. 즉, 공정관리 계획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매일 작업 종료 전에 현장감독이 작업 진척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음 날의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따라서 계획의 실현에는 현장감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현장감독은 대개 직업훈련생으로 시작해 이론과 실기 그리고 경험을 겸비한 최고 숙련의 기능인력이다.

그 이외에도 공정관리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있는데 첫째, 근로자의 다기능화로 공정 진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다. 둘째, 건설 자재의 표준화이다. 셋째, 공정관리 효율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교육을 통해 관련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수공업회의소의 마이스터 교육훈련 과정에서 입찰 요령, 견적서 작성, 공정관리 내용 등을 교육한다. 여기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는 요령, 장비 투입 요령, 노동력의 작업량 파악 요령 등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림 IV-5> 독일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핵심 요소



(5) 시사점

본 연구의 주제에 국한해 독일의 주39시간제 시행이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설계단계에서 일요일 등 법정휴무일에 대한 기간 및 수당을 공기 및 원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속성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배치하여 주말의 휴무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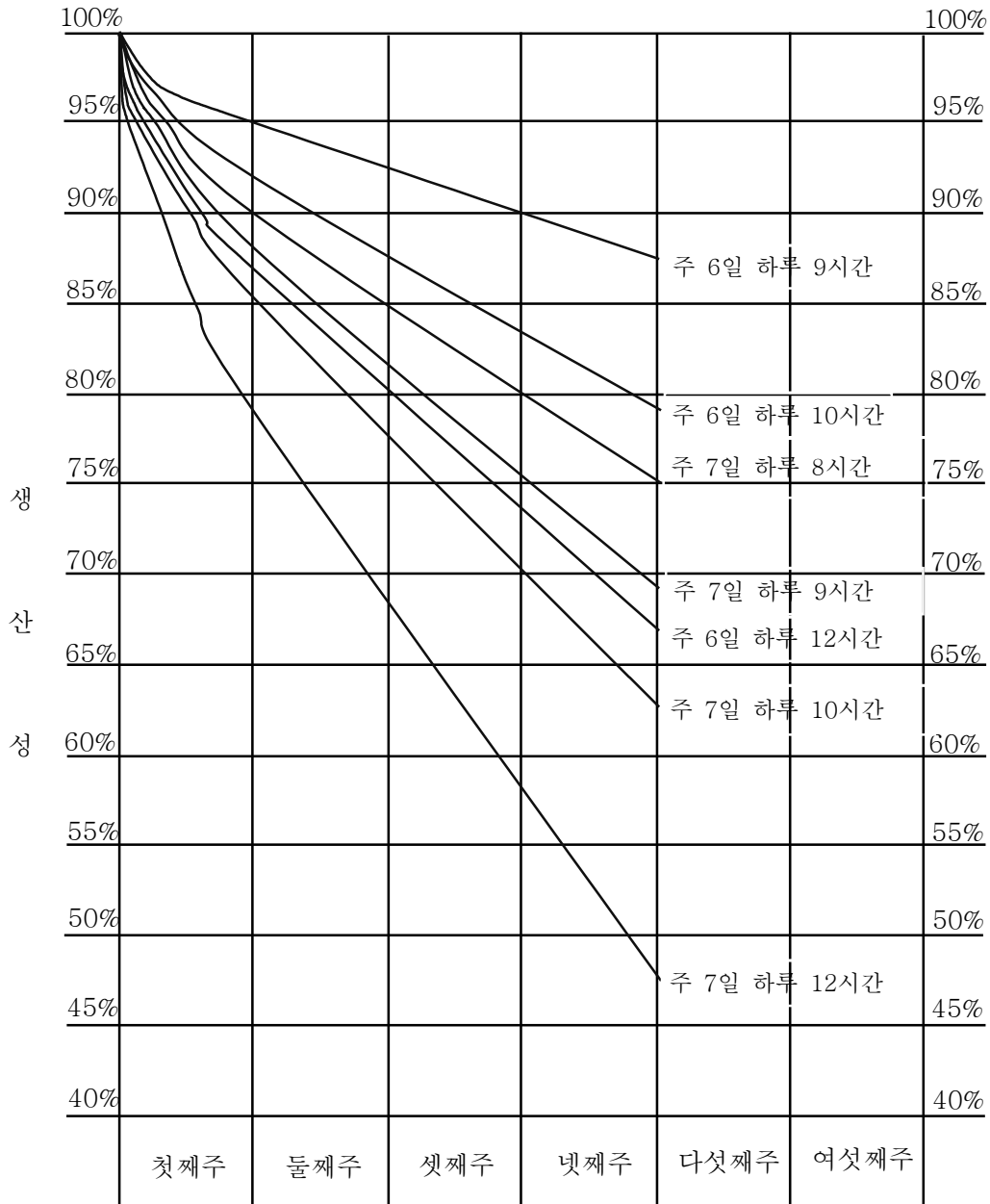
3. 미국 건설현장의 연장근로시간 영향 분석 결과

Thomas(1990)는 연장근로(overtime)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데 과도한 연장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는 그 원인으로서 연장근무수당의 지출, 근로자의 작업효율 저하, 결근률 상승, 재해사고율 상승, 생산품의 불량률 상승, 근로자의 피로도(unrest) 누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유능한 인력의 기피 등을 지적했다.

National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1969)에 의하면 주 7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것보다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생산성이 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Thomas(1990)에서 재인용). <그림 IV-6>은 주당 6일 또는 7일 그리고 하루 8~1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서로 조합하여 각각의 경우에 나타나는 생산성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의 크기는 '주 6일 하루 10시간 > 주 7일 하루 8시간 > 주 7일 하루 9시간 > 주 6일 하루 12시간 > 주 7일 하루 10시간 > 주 7일 하루 12시간'의 순으로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미국 건설현장의 연장근로시간 영향 분석이 한국의 일요일무제에 주는 시사점은 일요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연장근무수당의 절감, 근로자의 작업효율 향상, 결근을 제고, 재해사고율 저하, 생산품의 불량률 저하, 근로자의 피로도(unrest) 저하, 유능한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8) 생산성(productivity)은 투입된 노동시간당 작업결과물의 비율을 의미하며, 장기간 연장근무(extended overtime)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일정을 의미한다. 이 일정은 미리 계획된 일정이며 적어도 3주 이상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6> 생산성에 미치는 지속적인 연장근로의 효과



자료 : National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1969, 'Overtime and Productivity in Electrical Construction,' (Washington DC: National 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Thomas(1990)에서 재인용

70.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제5장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의 합리적 시행 방안

지금까지 다루어 온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휴무제의 합리적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변 여건의 조성 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건설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건설현장의 양 당사자인 건설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질적인 일요휴무의 실시가 어려웠던 일요휴무제 시범현장과 실질적인 일요휴무를 실시해 온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 실시 상황 및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합리적 시행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동일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일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주휴일 수당 지급이 일요휴무제 정착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시범실시 현장에서는 주휴일 수당의 지급이 없어 근로자가 반발하거나 일요일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일요휴무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그 취지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는 주휴일 수당의 지급으로 근로자의 참여가 높고 실질적인 휴식과 피로회복 가능했다.

둘째, 일요휴무를 공기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시범실시 현장이나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 모두 일요휴무에 대한 명시 없이 월 25일만 작업일로 책정하거나 또는 휴무일 명시 없이 공사기간만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때 일요휴무제의 실시에 따라 공사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설계단계에서 주휴일 수당을 공사원가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것 역시 시범실시 현장이나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때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공사원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

이 필요하다.

넷째, 적정 공사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범실시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으나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는 발주자와 원수급자가 낮은 수준이나 적정 공사비 수준의 공사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주휴일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일요휴무를 감안한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시범실시 현장에서도 격주로 일요일의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므로 이것에 대비해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는 이미 일요휴무를 염두에 두고 공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종일 우천시의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 예측하기 어려운 강우로 인한 작업중단 때문에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요휴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강우일수에 따른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휴일 수당의 전달 장치가 필요하다. 시범실시 현장에서는 반장 이하를 통해 임금이 지불되므로 도급구조의 최말단에 위치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까지 주휴일 수당이 전달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에 비해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는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대한 전달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덟째, 일요휴무제 시행을 일반화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시범실시 현장의 경우 소수 현장에 대한 시행으로 일요휴무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포항 지역의 플랜트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당해 지역의 플랜트 현장에서 모두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홉째,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실공사비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시범실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유지되어 실공사비의 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는 하도급구조의 단순화로 실공사비 누수를 억제해 일요휴무의 실시 여건을 조성했다.

열 번째, 공기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시범실시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중 보상 또는 민원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이것이 공기를 지연시켜 일요휴무의 여력을 앗아간 반면, 포항 플랜트 현장에서는 주로 공단 내에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문제 또는 민원 등의 공기지연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일요휴무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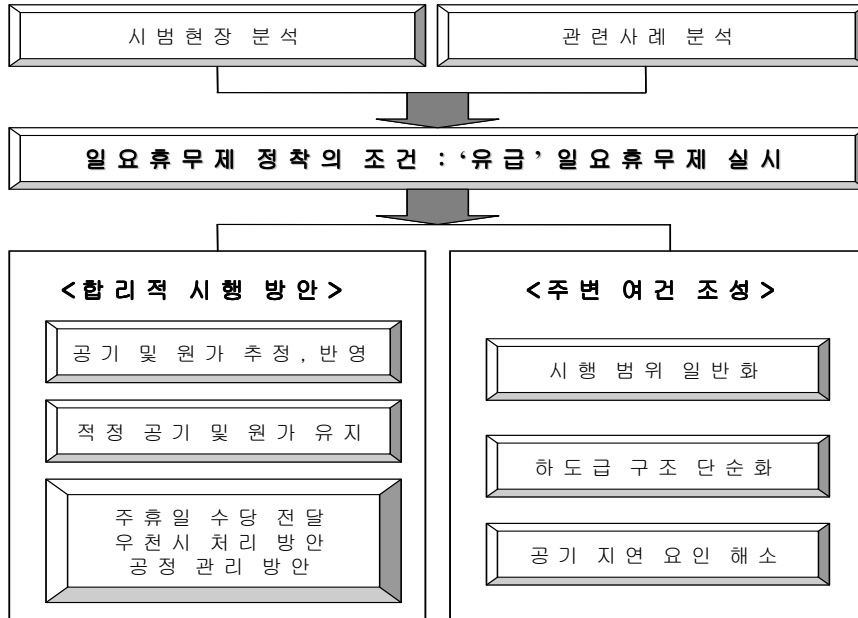
<표 V-1>은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과 포항 플랜트 현장의 비교와 이를 통한 기본 방향의 도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표 V-1>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 건설현장과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의 비교

주요 항목	일요일휴무 시범실시 현장	포항 플랜트 현장	기본 방향 도출
주휴일 수당 지급 여부	주휴일 수당의 지급이 없어 근로자가 반발하거나 일요일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	주휴일 수당의 지급으로 근로자의 참여가 높고 실질적인 휴식과 피로회복 가능	주휴일 수당의 지급이 일요일휴무제 정착의 전제조건임을 시사
일요일휴무 공기 반영	일요일휴무에 대한 명시 없이 월 25일만 작업일로 책정하거나 또는 휴무일 명시 없이 공사기간만 표시	일요일휴무에 대한 명시 없이 월 25일만 작업일로 책정	공기에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휴무일을 명시(기후 또는 기타 요인은 별도로 산정하여 포함함)
일요일휴무 원가 반영	주휴일 수당 미반영	주휴일 수당 미반영	주휴일 수당 반영 필요
적정 공사비 유지 노력	대체로 발주자와 원수급자가 최저가 낙찰제 적용	낮은 수준이나 적정 공사비 수준의 공사비 유지 노력	적정 공사비 수준 유지 노력 필요
일요일휴무 감안 공정관리	격주 일요일의 레미콘 공급 중단에 대비 공정관리	일요일휴무를 감안한 공정관리 정착	일요일휴무를 감안한 공정관리 계획수립 필요
종일우천시 처리 방안	결근과 동일한 무급 처리	통보시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일 수당 발생	무급휴일 처리 및 공기 보완조치 마련
주휴일 수당 전달 장치	반장 이하를 통한 임금 지불로 전달 실패 가능성 존재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지불로 전달 확실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지불 필요
일요일휴무제 시행 의지	소수 현장에 대한 시행으로 준수 의식 미약	포항 지역의 플랜트 현장에서는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	일요일휴무 실시 현장의 확대로 준수 의식 제고 필요
다단계 하도급구조	다단계 도급구조로 실공사비가 잠식되어 일요일휴무 실시 가능성 저하	도급구조 단순화로 실공사비 잠식을 억제해 일요일휴무 실시 여건 조성	하도급구조 단순화 필요
공기 지연 요인 해소	공사기간 중 보상업무 병행으로 공기지연 빈번	주로 공단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므로 보상문제 무관	보상 및 민원 등 공기 지연 요인에 대한 사전 해소 필요

<그림 V-1>은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 현장과 관련 사례의 분석으로부터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 시행 방안과 이를 둘러싼 주변의 시행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현장의 일요일휴무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가정이 저변에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그림 V-1> 일요휴무제 합리적 시행 방안의 기본 방향 도출



2. '유급' 일요휴무제의 실시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가장 근본적인 일요휴무제 정착의 전제조건은 주휴일 수당의 지급이었다. 주휴일 수당의 필요성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주휴일 수당 지급의 필요성 :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 일요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결과 발주자, 감리자, 건설업체 관리자 등은 일요휴무제의 실시가 작업의 연속성 저하를 통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요휴무제가 정착된다면 그보다는 적절한 일요일 휴식을 통해 작업능률의 향상 및 산재사고의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일요휴무제 정착에 필요

한 전제조건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주휴일 수당 지급’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7월에서 2005년 7월까지의 시범실시에는 전제조건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심층면담조사 과정에서 만난 발주자, 감리자, 건설업체 관리자 등은 일요휴무를 감안한 적정 공기와 원가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건설현장에서의 일요휴무제 실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일요휴무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⁹⁾ 심지어 ‘무급’이라도 일요휴무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했다. 이렇게 일요휴무제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근로자 본인의 피로 누적과 원만한 가족생활의 영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현장에서 일하는 응답자 중 54.6%는 한달 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귀가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무급으로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소득이 저하되므로 전체 응답자의 27.1%가 다른 현장에서 일해 돈을 벌겠다고 응답해 일요휴무제 실시의 취지를 사라지게 한다. 반대로 유급으로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98.1%의 응답자들이 개인활동 또는 가족생활 등을 하며 쉬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그야말로 실근로시간 단축과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일요휴무제의 취지를 고스란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휴일 수당 지급의 당위성 : 근로기준법 규정

건설현장의 당사자 의견 못지않게 1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이다. 만일 주휴일 수당의 지급을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면 수당을 지급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법 제54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주휴일)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현장 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

따라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6일을 만근할 경우 7일째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일당에는 제반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소위 ‘포괄역산제’에 따른 해석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에 일당의 차이가 있어야 하나 실제로 그러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까지 미리 임금에 포함되어 있

9) 물론 금번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대표성 있는 엄밀한 분석을 할 수는 없으나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고 하기에는 법리적인 무리가 따른다고 한다.¹⁰⁾ 주휴일 수당은 주 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것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

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영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V-2>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주44시간제에 의거하여 1주일에 공사수행일로 6일을 산정하더라도 직접노무비에는 주휴일 수당을 감안하여 7일치를 계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요일무제 시범실시 현장과 포항의 플랜트 현장 어느 현장에서든 일요일에 대한 휴일 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한 예는 없었다. 따라서 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체에서 일요일 주휴일 수당을 지급할 능력을 설계단계에서부터 확보해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V-2>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수당 지급과 직접노무비 반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공 기	○	○	○	○	○	○	×
직접노무비	○	○	○	○	○	○	○

주 : ○는 설계단계에서 포함, ×는 불포함을 의미함.

(3) 주휴일 수당의 확보 방안

사업주가 주휴일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 V-3>에서 보듯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 방법 1은 발주자로 하여금 설계단계에서 주휴일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주휴일 수당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낙찰률이 지나치게 저하할 경우 사업주의 지불 여력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법 1을 통한 사업주의 주휴일 수당 지불 능력 확보의 전제조건은 낙찰률의 유지이다. 방법 1에 의할 경우 주휴일 수당의 반영이 공기 또는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

10) 이러한 법률 해석은 노동부 담당자의 해석과 본 연구 수행과정의 자문회의에 참석한 담당 사무관이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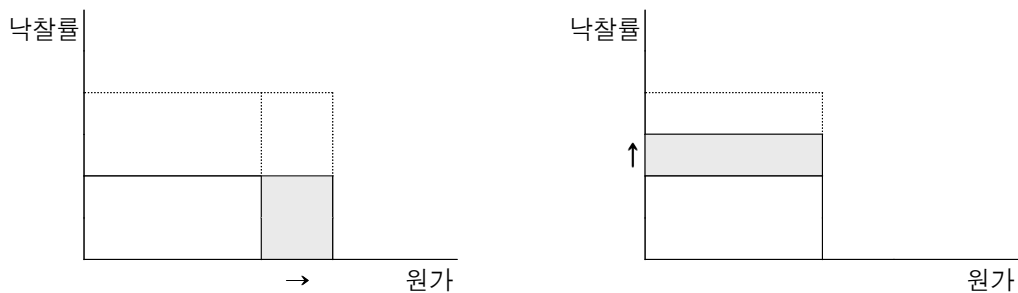
방법 2는 발주자의 주휴일 수당 추가 계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일 수당을 고려하여 낙찰률을 높이면 주휴일 수당의 지불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만 일요일 무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수당의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낙찰가를 높여 쓸 수 없다. 따라서 방법 2를 통한 사업주의 주휴일 수당 지불 능력 확보의 전제조건은 유급 일요일무제의 실시가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방법 1과 2의 혼합이 일반적일 수 있다. 즉, 주휴일 수당의 반영과 낙찰률 조정이 병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방법 1에 의한 주휴일 수당의 계상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V-3> 건설사업주의 주휴일 수당 지불 여력 확보 방법

방법 1 : 낙찰률 유지 + 주휴일 수당 계상

방법 2 : 낙찰률 상승 + 원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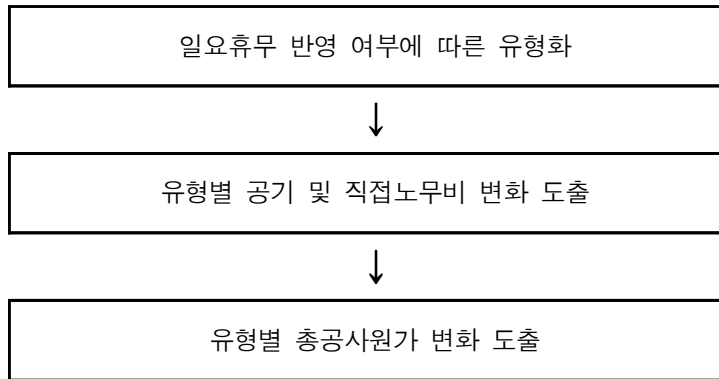
3. 일요일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변화 추정

상술한 바와 같이 방법 1에 의할 경우 주휴일 수당의 반영이 공기 또는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계량적 분석의 흐름을 설명하고 공기, 직접노무비,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현실을 단순화시킨 가정에 기초한 모형과 특정한 조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분석의 흐름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원가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순서를 도식화하면 <그림 V-4>와 같다. 첫째, 현재 공기 및 원가에 일요휴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화한다. 둘째, 둘째, 유형별로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직접노무비의 변화를 도출한다. 셋째, 공기 및 직접노무비 변화 수치를 활용하여 총공사원가의 변화를 도출한다.

<그림 V-4> 일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원가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의 흐름



(2) 일요휴무 반영 여부에 따른 유형화

현재 일요휴무를 공기와 원가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표 V-2>와 같이 4가지의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유형 1은 일요휴무를 공기에 반영하고 원가에도 반영한 경우이다. 이미 일요휴무를 공기와 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일요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분석할 필요가 없다. 유형 2는 일요휴무를 공기에는 반영하고 있으나 원가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일요휴무제의 실시로 원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유형 3은 일요휴무를 공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원가에는 반영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공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요일에도 작업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일 수당이 아니라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유형 4는 공기와 원가 모두에 일요휴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일요휴무의 실시 에 따라 공기 및 원가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형 2와 유형 4가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대상이다. 그 이외에 1일 노무량 또는 장비량을 증가하여 투입하거나 일요일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나 분석의 대상으로는 상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요일에 현장을 폐쇄함으로써 나타나

는 영향을 단순화하여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V-2> 일요일 휴무의 반영 여부에 따른 유형화

일요일 휴무 반영 여부		공사 원가	
		반영	미반영
공사 기간	반영	유형 1	유형 2
	미반영	유형 3	유형 4

(3) 유형별 공사기간 및 직접노무비 변화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불능일은 일요일과 일정 기후조건에 해당하는 날로 국한한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요일 52일과 기후조건에 의한 작업불능일 105일을 상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후조건에 의한 작업불능일인 105일은 아파트현장의 60~118일 그리고 도로현장의 103~118일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상 획일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때 105일에 포함된 일요일 15일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연간 작업가능일은 223일이 된다(365일 - 105일 - 52일 + 15일 = 223일).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나 전혀 무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일 임금을 1원이라고 가정한다. 셋째, 모든 근로자들이 주 6일 만근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가능일 기간 동안 주휴일 수당이 발생한다.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주일 미만을 일하는 경우는 없었다. 넷째, 직접노무비는 실근로일 임금과 일요일 주휴일 수당으로 구성된다. 작업불능일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계산에 의하면 연간 실근로일 임금은 223원이고 주휴일 수당은 37원이다. 따라서 연간 직접노무비는 260원이다. 다섯째, 현재는 일요일에 작업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휴일 수당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유형 2(일요일휴무에 대한 공기 반영, 노무비 미반영)의 경우

이제 유형 2(일요일휴무에 대한 공기 반영, 노무비 미반영)의 경우 일요일휴무제의 실시에 따라 공기 및 직접노무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계산해 보자(표 V-3 참조). 현행 공기 및 직접노무비를 살펴보면, 유형 2는 지금도 일요일 37일과 기후조건 불능일 105일을 휴무일로 공기

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1년간 실근로일수는 223일에 그친다. 직접노무비를 산정해보면 작업일에 해당하는 223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나 휴무일인 37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연간 직접노무비는 223원이다.

다음은 일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른 연간 공기 및 직접노무비를 산정해 보자. 공기는 일요일 37일과 기후조건 불능일 105일을 제외한 223일이 작업가능일이다. 직접노무비는 작업일 임금 223원 이외에 주휴일 수당으로 37원이 지급되므로 총 직접노무비는 260원이다.

이제 일요일휴무제 실시로 인한 공기 및 직접노무비를 변화를 산정해 보자. 공기는 원래부터 일요일을 휴무일로 반영했으므로 변화가 없다. 직접노무비는 주휴일 수당 37원이 증가하므로 증가율은 16.6%이다.

2) 유형 4(일요일휴무에 대한 공기 미반영, 노무비 미반영)의 공기 및 노무비 변화

이번에는 유형 4(일요일휴무에 대한 공기 미반영, 노무비 미반영)의 공기 및 노무비 변화를 알아보자. 현행 근로일수를 살펴보면 유형 4는 일요일 37일을 휴무일로 공기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간 365일에서 기후조건 불능일 105일만을 차감한 260일이 실근로일수이다. 직접노무비는 작업일에 해당하는 260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므로 연간 직접노무비는 260원이다. 별도의 휴무일 수당은 없다.

다음은 일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른 연간 공기 및 직접노무비를 산정해 보자. 공기는 일요일 37일과 기후조건 불능일 105일을 제외한 223일이 작업가능일이다. 직접노무비는 작업일 임금 223원 이외에 주휴일 수당으로 37원이 지급되므로 총 직접노무비는 260원이다.

끝으로 일요일휴무제 실시로 인한 공기 및 직접노무비 변화를 살펴보자. 공기는 원래 일요일을 휴무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37일의 작업일이 지연된다. 따라서 공기지연율은 $14.2\% (= 37\text{일}/260\text{일})$ 이다. 직접노무비는 주휴일 수당 37원의 증가는 작업일 감소에 따른 실근로일 임금 37원의 감소와 상쇄된다. 하지만 지연된 37일분의 임금과 그 기간 중의 주휴일 수당 5.3원이 추가되므로 42.3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직접노무비 증가율은 16.3%이다.¹¹⁾

11) 공기지연율과 직접노무비 증가율의 계산 결과는 작업불가능일 105일을 무시하고 계산해도 동일하다. 분자와 분모에서 동일한 비율로 가산되거나 차감되기 때문이다.

<표 V-3> 일요일휴무제 실시로 인한 유형별 공기 및 직접노무비 변화 추정

구 분		유형 2	유형 4	
		공기 반영 노무비 미반영	공기 미반영 노무비 미반영	
현행 연간 기본 특성	총일수(일)	365.0	365.0	
	작업불능일수(일요일)(일)	142.0	105.0	
	일요일(일)	52.0	0.0	
	기후조건 불능일(일)	105.0	105.0	
	기후조건 불능일 중 일요일(일)	15.0	0.0	
	실근로일수(일)(A)	223.0	260.0	
	일일평균임금(원)	1.0	1.0	
	직접노무비(원)(C)	223.0	260.0	
	실근로일임금(원)	223.0	260.0	
	주휴일수당(원)	0.0	0.0	
일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른 공기 및 직접노무비	총일수(일)	365.0	365.0	
	작업불능일수(일요일)(일)	142.0	142.0	
	일요일(일)	52.0	52.0	
	기후조건 불능일(일)	105.0	105.0	
	기후조건 불능일 중 일요일(일)	15.0	15.0	
	실근로일수(일)(B)	223.0	223.0	
	일일평균임금(원)	1.0	1.0	
	직접노무비(원)(D)	260.0	260.0	
	실근로일임금(원)	223.0	223.0	
	주휴일수당(원)	37.0	37.0	
일요일 휴무제 실시로 인한 변화	공사기간 지 연	공기지연일수(일)(A-B)	0.0	37.0
		공기지연율(%)(A-B)/A	0.0	14.2
	직 접 노 무 비 증 가	1년간 직접노무비(원)(D-C=E)	37.0	0.0
		실근로일임금(원)	0.0	-37.0
		주휴일수당(원)	37.0	37.0
		공기연장분 직접노무비(원)(F)	0.0	42.3
		실근로일임금(원)	0.0	37.0
		주휴일수당(원)	0.0	5.3
		직접노무비 증가액(원)(E+F)	37.0	42.3
		직접노무비 증가율(%)(E+F)/C)	16.6	16.3

(4) 유형별 총공사원가 변화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노무비 이외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비임대료의 변화가 예상되나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계약방법을 통해 휴무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장비임대료의 변화는 감안하지 아니한다. 둘째,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의 증가율은 공기지연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표 V-4>와 같은 공사원가 계산을 거쳐 <표 V-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분석 결과 유형 2의 경우 건축공사의 원가가 5.2%, 토목공사의 원가가 6.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원가가 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형 4의 경우 건축공사의 원가가 6.1%, 토목공사의 원가가 7.8%,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원가가 7.6%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층면담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실제 발주자는 유형 2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크기 만큼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유형 2의 경우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가 상승률은 건축공사의 경우 3.6%, 토목공사의 경우 4.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경우 4.6%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로회복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나아가 양질의 신규인력 진입으로 숙련기반이 다져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은 결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표 V-4>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시(건축공사)

(단위 : %)

공사원가 비목		산 식	요율 (%)	공사비 구성비	유형 2		유형 4			
					공기 반영, 노무비 미반영		공기 미반영, 노무비 미반영			
					증가율	공사비 구성비	증가율	공사비 구성비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계	-	-	46.800	0.000	46.800	0.000	46.800	
		직접재료비	재료량단가	-	-	-	-	-	-	-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율(%)	-	-	-	-	-	-	-
	노 무 비	작업설·부산물	공제	-	-	-	-	-	-	-
		소계	-	-	-	27.300	0.146	31.284	0.160	31.681
		직접노무비	노무량*단가	-	-	24.000	0.166	27.984	0.163	27.912
	주 요 경 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13.75	3.300	0.000	3.300	0.142	3.769	
		보 험 료	소계	-	-	19.900	0.044	20.768	0.047	20.836
			소계	-	-	2.958	0.146	3.390	0.160	3.433
			산재보험	노무비*요율(%)	3.30	0.901	0.146	1.032	0.160	1.045
			고용보험	노무비*요율(%) : 2등급	0.93	0.254	0.146	0.291	0.160	0.295
			건강보험	노무비*요율(%)	2.105	0.575	0.146	0.659	0.160	0.667
			국민연금	노무비*요율(%)	4.50	1.229	0.146	1.408	0.160	1.426
			산출경비	소요량*단가	-	9.814	0.000	9.814	0.000	9.814
			환경보전비	(재료비+간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0.20	0.161	0.049	0.169	0.049	0.169
			안전관리비	(재료비+간접노무비+관급자재)*요율(%)	1.88	1.331	0.056	1.406	0.055	1.405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요율(%)	1.87	0.449	0.166	0.523	0.163	0.522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요율(%)	7.00	5.187	0.054	5.466	0.059	5.49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2.98	2.800	0.000	2.800	0.142	3.198			
이윤	(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6.40	3.200	0.097	3.511	0.114	3.566			
총원가	-	-	100.00	5.162	105.16	6.080	106.08			
			0		2		0			

- 주 : 1) 공사규모 : 50억원 이상, 13개월 이상, 건축공사 대상
 2) 공사비 구성비는 권오현·이중수(200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3) 간접노무비 증가율, 일반관리비 증가율 : 공기지연율로 계상

<표 V-5> 유형별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추정치 예시

(단위 : %)

공사별	공사원가 비목	공사비 구성비	유형 2	유형 4
			공기 반영 노무비 미반영	공기 미반영 노무비 미반영
건축 공사	재료비	46.800	46.800	46.800
	노무비	27.300	31.284	31.681
	경 비	19.900	20.768	20.836
	일반관리비	2.800	2.800	3.198
	이 윤	3.200	3.511	3.566
	총원가	100.000	105.162	106.080
토목 공사	재료비	28.700	28.700	28.700
	노무비	33.000	37.814	38.295
	경 비	26.900	27.964	28.047
	일반관리비	3.300	3.300	3.769
	이 윤	8.100	8.853	8.986
	총원가	100.000	106.631	107.797
건설 종합	재료비	30.600	30.600	30.600
	노무비	32.400	37.131	37.599
	경 비	26.100	27.146	27.227
	일반관리비	3.300	3.300	3.769
	이 윤	7.600	8.310	8.436
	총원가	100.000	106.487	107.631
적용된 증가율		직접노무비	16.6	16.3
		공사기간	0.0	14.2

주 :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공사기간 13개월 이상의 공사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임.

4. 적정 공기 및 원가의 확보와 유지

(1) 적정 공기 및 원가의 확보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추정된 방식과 유사하게 당해 공사에 미치는 적정한 공기 및 원가 변화분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신규 공사인 경우에는 일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공기 및 원가 증가분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여 발주해야 한다. 특히, 일요일을 비롯한 법정휴무일 등을 명시하여 일요휴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일요휴무제 실시로 인한 공기 및 원가 증가분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부의 회계통첩 등 행정수단을 통한 반영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공기와 원가에 일요휴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주단위로 공기와 원가를 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주(週)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를 유급 휴무일로 배치하고 공기와 원가의 단위로 삼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기는 ○○○일이나 또는 ○○년도부터 ○○년도까지가 아니라 ○○주(週)로 표시되고 원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계상될 것이다. 여기에는 6일 근무를 전제로 하루의 주휴일 수당이 포함된 노무비가 반영될 것이다.

(2) 적정 공사비 유지

포항 플랜트 현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도급 단계에서 주휴일 수당의 지급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즉, 발주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등 각 도급단계에서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 경쟁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유지함으로써 무리한 시공을 예방해야 한다. 지나친 저가수주는 공기 및 원가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일요휴무의 실시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일요휴무제의 시행 범위를 일반화하거나 주휴일 수당 지급을 일반화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낙찰률을 높임으로써 주휴일 수당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2의 논의와 유사하다.

5. 건설현장에서의 세부 시행 방안

(1) 일요일 휴무를 감안한 효율적 공정관리 방안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 현장의 레미콘 또는 타워크레인 공급 중단에 대비한 공정관리 또는 독일의 주39시간제하에서의 공정관리 사례로부터 효율적인 공정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 방향은 작업의 연속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종 또는 공정은 주초에 배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작업간의 연계 또는 자재 조달 등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미 레미콘 또는 타워크레인의 일요일휴무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2) 주휴일 수당 전달 방안

발주자가 일요일휴무제 실시에 따라 공기와 원가를 반영하고 사업주가 적정 공기와 원가를 유지하더라도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주휴일 수당이 실제로 최말단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수차례의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공사비용이 누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전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포항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부터 전달 방안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즉,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 합법적인 건설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적어도 합법적인 건설업자 수준에서는 주휴일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건설 분야의 법규 또는 노동 분야의 법규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나 자격 없이 불법 하도급을 받는 반장이나 팀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면 잠적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법적인 건설업자 수준에서 주휴일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달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장의 관행상 하위 도급단계에 있는 반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주휴일 수당만이라도 합법적인 건설업자가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직접 지불은 주휴일 수당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합법적인 건설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안해볼 수

있다.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퇴직공제부금 수첩,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 자료, 기타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일용근로자의 6일 만근을 입증하면 그에 대한 일요일 주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때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주휴일 수당을 받고자 하는 통장번호를 미리 자신이 소속된 합법적인 건설업체에 알려 주고,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는 주휴일 수당을 하위의 작업 팀에 전달하지 않고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주휴일 수당이 증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평소에 얼마의 일당이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며칠을 일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8시간 기준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일요일휴무제의 실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마치 현재 자신의 임금을 요구하듯이 주휴일 수당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우천시 처리 방안

일요일휴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주중에 하루 종일 비 또는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한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소득이 저하되거나 또는 휴무일이 불규칙해져 일요일휴무제의 정착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포항의 플랜트 현장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급이지만 결근은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주휴일 수당의 발생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중에 종일 비가 오는 횟수에 따라 처리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주중의 우천일이 하루일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주휴일 수당을 인정하고 일요일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하지만 주중의 우천일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되 주휴일 수당을 인정하고 기후 여건이 좋은 일요일에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루 종일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 대해 각 지역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강우 이외에도 강풍 등 이와 유사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6. 주변 여건 조성 방안

(1) 다수 현장의 동시 시행

건설현장의 일요일휴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관련 당사자가 이를 주어진 조건(given conditions)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나 사업주는 어디에 가든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요일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일요일휴무제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시에 모든 현장에 일요일휴무제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모든 공공공사 현장과 대규모의 민간현장 등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으로 실공사비 누수 억제

건설현장에 일요일휴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업 팀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실공사비 누수를 통해 일요일휴무제의 정착을 가로 막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 음성적으로 관행화된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 중간에서 실공사비가 누수되는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 포항지역 플랜트 현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실공사비 잠식을 억제해 주휴일 수당의 지급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휴일 수당의 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다.

(3) 공기지연 요인에 대한 사전적 해소

당해 공사와 관련된 보상 업무와 예견되는 민원 업무는 미리 처리하고 착공하는 것이 일요일휴무제 실시의 중요한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공기에는 착공에서 준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7.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및 판단기준의 충족

먼저 위에서 논의한 일요휴무제 정착을 위한 합리적 시행 방안을 요약하고 이것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공사 수행 단계별 합리적 시행 방안 요약

지금까지 논의한 건설현장의 일요휴무제 정착을 위한 합리적 시행 방안을 공사 수행 단계 또는 공가 및 원가의 전달 경로별로 정리하면 <그림 V-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일요휴무제 수립 단계에서는 정부는 시행 범위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설정해 적용의 일반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가 일요휴무제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발주자로 하여금 공기 및 원가에 일요휴무제를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형 2(공기 반영, 직접노무비 미반영)의 경우 건축공사의 원가가 5.2%, 토목공사의 원가가 6.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원가가 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크기 만큼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유형 2의 경우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가 상승률은 건축공사의 경우 3.6%, 토목공사의 경우 4.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경우 4.6%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주 이전단계에서 용지보상이나 예견되는 민원 등 공기지연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단순화를 유도해 실공사비의 누수 요인을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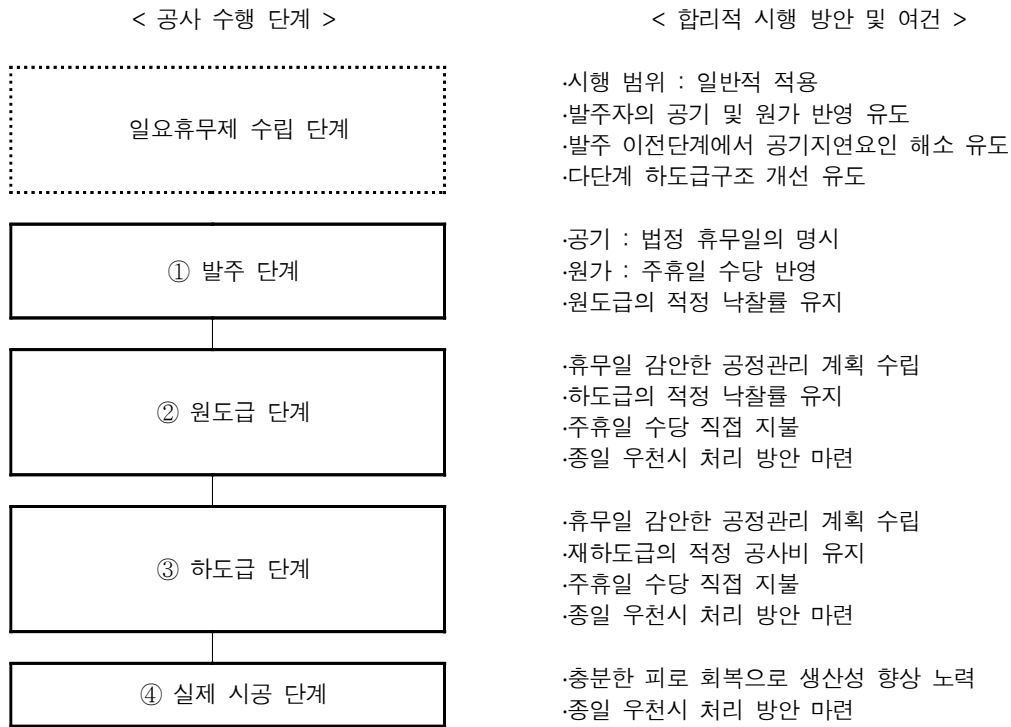
발주 단계에서는 발주자는 공기에 법정 휴무일을 명시하고 원가에 주휴일 수당을 반영한다. 이때 주(週) 단위의 공기 및 원가 산정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원도급자에게 적정 수준의 낙찰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원도급 단계에서 원수급자는 주휴일 수당의 지급을 염두에 두고 적정 수준의 낙찰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 과정에서는 휴무일을 감안한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주휴일 수당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우천시 일당 및 주휴일 수당을 처리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편, 하도급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낙찰률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도급 단계에서 하수급자

의 역할은 원도급 단계의 원수급자와 유사하다.

실제 시공 단계에서 팀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피로 회복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각 현장에 적합한 우천시 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그림 V-5> 공사 수행 단계별 일요휴무제 시행 여건 요약



(2) 합리적 시행 방안에 의한 판단기준의 충족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합리적 시행 방안이 앞에서 제시했던 합리적인 건설현장 일요휴무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현재의 상태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표 V-6>에서 보듯이 다소 표면적인 비교이기는 하나 현행 일요휴무제 시범실시에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일요일에 현장 폐쇄만을 요구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관심 사항 및 판단 기준이 거의 충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의 공기 반영과 레미콘 등의 격주 휴무에 대비하기 위한 공정관리 관행이 존재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시행 방안을 도입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모든 판단기준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V-6> 합리적 시행 방안에 의한 일요일무제 판단기준의 충족

비교		일요일무제 실시 방안	<일요일무제 시범실시>	<합리적 시행 방안>
			·주휴일 수당 부재 ·공기 및 원가에 반영 미흡 ·적정 공사비 미확보 ·일요일무 감안 공정관리 ·우천시 처리 방안 부재 ·준수의지 미약 : 일부 적용 ·다단계 하도급구조 존재 ·공기지원 요인 존재	·주휴일 수당 전제 ·공기 및 원가에 반영 ·적정 공사비 확보 ·일요일무 감안 공정관리 ·우천시 처리 방안 마련 ·준수의지 강화 : 일반화 ·하도급구조 단순화 ·공기지원 요인 해소
정부	건교부	일요일무 실시로 건설생산성 제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신규인력 확보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정착) ○ (일요일무 정착)
	노동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정착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정착) ○ (일요일무 정착) ○ (일요일무 정착)
	재경부	적정 공사원가 반영	× (주휴일 수당 미반영)	○ (주휴일 수당 반영)
	발주자	양질의 건설생산물 확보 적정 원가 및 기간 반영	× (일요일무 미실시) △ (주휴일 수당 미반영)	○ (일요일무 정착) ○ (주휴일 수당 반영)
사용자	적정 원가 및 기간 확보 공정관리 및 생산요소 투입의 효율화 주휴일 수당 산정 방법 및 적정 수준	△ (주휴일 수당 미반영)	○ (주휴일 수당 반영)	
		△ (레미콘 격주 휴무 대비) × (주휴일 수당 부재)	○ (연속성 감안 대비) ○ (주휴일 수당 반영)	
근로자	일요일 주휴일 수당 확보 피로 회복 및 산재 감소 가족의 화목 도모	× (주휴일 수당 부재)	○ (주휴일 수당 지급)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정착)	
		× (일요일무 미실시)	○ (일요일무 정착)	

주 : ○는 충족, △는 부분 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8.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 건설현장의 가장 후진적인 관행 중 하나인 ‘주7일제’ 작업 방식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후진적인 주7일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 또는 공기의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건설인력 기반의 확충을 통해 안전한 건설시설물을 구매하기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요컨대, 일요일휴무제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휴일 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유급 일요일휴무의 실시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일요일휴무제의 실시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관련 당사자가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게 되어 정착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발주자는 일요일휴무를 공기와 원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낙찰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셋째, 하도급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실공사비의 누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주휴일 수당의 확실한 전달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요일휴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하도급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공기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를 시공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됨을 시사한다. 실제 시공 과정의 공기를 아무리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보상 등의 문제에 봉착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일요일휴무를 실시할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현실에 가까운 유형 2(공기 반영, 직접노무비 미반영)의 경우 건축공사의 원가가 5.2%, 토목공사의 원가가 6.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원가가 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여기에 낙찰률을 곱한 크기 만큼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낙찰률이 70%라고 한다면 유형 2의 경우 발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원가 상승률은 건축공사의 경우 3.6%, 토목공사의 경우 4.6%, 이 둘을 가중평균한 건설종합의 경우 4.6%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나아가 양질의 신규인력 진입으로 숙련기반이 다져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은 결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건설현장의 일요일휴무제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단순히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작은 투자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요일휴무제의 실시는 피부에 와 닿는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후진적인 이미지를 털어 내고 신규 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국내 문헌

- 권오현·이종수(200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1991), 건설공사의 효율적 공정관리와 적정공기산정방안
대한주택공사(1998), 건설공사의 적정 표준공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
심규범(2001),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및 육성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____·김민관·이의섭·김지혜(2003),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____·김지혜(2004),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정경제부,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1989.03.08 회계 2210-591)’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2), 건설공사의 공기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외 문헌

- Thomas(1990), 『Effects of Scheduled overtime on Labor Productivity :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심층면담>

- A 아파트 건설현장 발주자, 감리자, 원수급자
- B 도로공사현장 감리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팀장 및 팀원
- C 도로공사현장 감리자, 원수급자, 하수급자, 팀장 및 팀원
- D 도로공사현장 감리자, 원수급자
- E 플랜트건설현장 원수급자, 하수급자, 건설노조 등

94.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휴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Abstract

An Analysis on the Example Enforcement Effects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the Construction Sites
and Rational Methods of Enforcement

From July 2004, in other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head offices, they introduces the 40-hour workweek system step by step depending on an employee size of the companies. But, on the construction sites, there is continuing 7-day workweek system without a specific holiday. Further more, the situ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is notorious for no vocational vision, unstable employment, low wage level, dangerous work environments, and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So the construction works had been already a typical 3D job long ago. As the results, construction industry is confronting a threat of the skilled workers' exhaustio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hich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skilled workers' exhaustion makes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construction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e of those efforts,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nforced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7 sample construction sites for about one year. The meaning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is closing the construction site on every sunday in order to prevent workers' overwork.

Through the survey on the weekly holiday scheme, supervisor and manager on construction sites asserted that the basic precondition of that scheme should be a weekly holiday allowance. Also, construction workers eagerly wanted a rest on every sunday with a weekly holiday allowance. Therefore, in order to obey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blic owner should add up a weekly holiday allowance in a cost accounting process. As the result of calculation estimate, the introduction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shall increase the cost 5.2% in the case of apartment construc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First, we are prepared for increasing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to enforce the introduction of the weekly holiday scheme on construction sites. Second, in order to settle down this scheme early we should enforce it as broadly as possible. Third, by simplifying the multi-level subcontract structure we can prevent a leakage of cost and promise a delivery of the weekly holiday allowance to workers at the last-level. Fourth, we should not include the time buying the ground into a construction period. Finally, we should recognize the added cost for the introduction this scheme as not a just added money but an investment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tself.

<부록>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현장 일요일무제” 관련
설문조사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직종의 사람들은 주5일제로 여기 저기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만,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일요일도 없이 주7일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전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며, 작업환경 또한 위험하다보니 건설현장의 일은 대표적인 기피직종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젊은 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일 잘하는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겨 고령화가 심각해 향후 5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난 1년 남짓 전국 각 지역의 현장을 지정해 “건설현장 일요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요일무제란 건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해 날씨와 무관하게 일요일마다 건설현장을 폐쇄해 건설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요일무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설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결과는 제도 설계의 기초 자료로서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입니다.

문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 02-3441-0656

2005. 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해당 번호에 체크(○ 또는 √) 하시거나 직접 써 주십시오.

가. 응답자 관련 기본 사항

1. 귀하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예 : 서울, 전남, ……).

_____ 도 또는 시

2. 귀하께서는 언제 출생하셨습니까? _____ 년도

3.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약 _____ 년

4. 귀하의 숙련 수준은 어떻습니까?

- 1) 조공 또는 일반공
- 2) 준기공
- 3) 기능공
- 4) 반장, 팀장 등
- 5) 기타(_____)

5. 현재 또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귀하께서 하시는 일, 즉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예 : 형틀, 철근, 콘크리트, 조적, 미장, ……).

나.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활동 관련 사항

6. 귀하께서는 현재 현장 숙소나 여관 등에 묵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3) 기타(_____)

98.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7. 근래에 귀하께서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댁에 가십니까?

- 1) 내 집에서 출퇴근하므로 매일 집에 간다.
- 2) 1주일에 한 번 집에 간다.
- 3) 2주일에 한 번 집에 간다.
- 4) 한 달에 한 번 집에 간다.
- 5) 두 달에 한 번 집에 간다.
- 6) 기타 (_____)

8. 귀하께서는 본 현장에서 주로 어떤 형태로 얼마의 임금을 받으십니까?

- 1) 일당으로 받는다. (일당 _____원)
- 2) 일당제 월급으로 받는다. (월급 _____원)
- 3) 도급제(성과급제, 돈내기 등)로 받는다. (한달에 보통 _____원)
- 4) 기타(_____)

9. 귀하께서는 본 현장에서 얼마 만에 한번씩 임금을 받으십니까?

- 1) 1주마다 2) 보름마다 3) 매월 4) 기타 (_____)

10. 귀하께서는 현재의 현장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일하십니까?

- 1) 일반건설업체의 직영
- 2)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 3)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 팀
- 4)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 팀
- 5) 기타(_____)

11. 귀하께서는 현재 현장에서의 작업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적어 주십시오.

- 1) 작업 시작 시각 : 오전 _____시 _____분부터
- 2) 작업 종료 시각 : 오후 _____시 _____분까지

12. 귀하께서는 현재 현장에서의 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적어 주십시오.

- 1) 지금까지 일한 기간 : _____개월 _____일
- 2) 앞으로 일할 기간 : _____개월 _____일

13. 요즈음 귀하께서는 일요일을 보통 어떻게 보내십니까?

- 1)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한다.
- 2) 종교 활동이나 기타 개인 활동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 3) 피로를 풀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 4) 기타(_____)

다. 건설현장 일요일무제 관련 사항

“건설현장 일요일무제”란?

건설근로자의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해 날씨와 무관하게 일요일마다 건설현장을 폐쇄해 건설근로자를 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요일무제를 실시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14. 귀하께서는 일요일마다 폐쇄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 14.1 그 곳에서 일요일 일당을 받으셨습니까? 1) 받았다. 2) 안 받았다.
- 2) 없다.

15.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은 주5일제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일요일 하루라도 쉬어 보자’는 주장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 일을 안 해도 일요일 일당을 준다면 찬성한다.
- 2)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 일요일 일당을 주지 않아도 찬성한다.
- 3) 반대한다.

100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16.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도 일요일 일당을 주지 않는다면 일요일마다 현장을 폐쇄하는 일요일휴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소득을 떨어뜨려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2) 소득은 떨어지더라도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니 실시해야 한다.
- 3) 기타 (_____)

17.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 일을 안 해도 일요일 일당을 준다면 귀하께서는 일요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1)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
- 2)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
- 3) 하루만 쉬어서는 집에 다녀오기 어려우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
- 4)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
- 5) 기타 (_____)

18.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 일을 안 해도 일요일 일당을 준다면 귀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쉬는 것이 좋겠습니까?

- 1)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쉬는 것이 좋겠다.
- 2) 평소에 조금 힘들어도 2~3주에 한번 2~3일을 묶어서 쉬는 것이 좋겠다.
- 3) 기타 (_____)

19.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도 일요일 일당을 주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일요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1)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쉬고 오겠다.
- 2)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개인 활동을 하겠다.
- 3) 하루만 쉬어서는 집에 다녀오기 어려우므로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
- 4) 일요일에 일하는 다른 현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겠다.
- 5) 기타 (_____)

20. 1주일 중 6일 만근한 사람에게도 일요일 일당을 주지 않으면서 현장을 폐쇄한다고 해도 귀하께서는 그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 1) 팀장이나 동료들이 참고 일한다면 나도 그냥 일요일에 쉬면서 일하겠다.
- 2) 팀장이나 동료들이 참고 일해도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겠다.
- 3) 기타 (_____)

21. 다음은 건설근로자가 일요일을 쉴 경우 예상되는 장점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번호에 체크(√ 또는 ○)하여 주십시오.

주요 장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피로를 풀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생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능률이 올라 6일 만에 6.5일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안전사고가 줄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품질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스트레스가 줄어 작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은 건설근로자가 일요일을 쉴 경우 예상되는 단점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번호에 체크(√ 또는 ○)하여 주십시오.

주요 단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작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공기가 지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월요일에는 작업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저하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일요일에 술을 많이 먹게 되어 피로가 더 쌓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긴장도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작업감각이 떨어져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데 귀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저자 소개

심 규 범 (gbshim@cerik.re.kr)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학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노동경제학 전공, 경제학 석사 및 박사)
- 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 전자카드사업 추진과제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 PQ의 재해율 반영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5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건설교통부, 2004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 건설산업 교육훈련의 노·사·정 참여 확대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 대한건설협회, 2003
-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건설교통부, 2003
- 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현재 주요 활동>

- 노동부 고용보험전자카드추진지원단 자문위원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법무부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 위원
- 건설교통부 건설기능인력육성TFT 전문위원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